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체코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약식 국명: Czechia], 체코어: eská Republika)
면적	78,870 km ² (자료원 : 체코 통계청)
수도	프라하(Prague)
민족(인종)	
언어	체코어
종교	가톨릭(7.0%) 개신교(0.5%), 기타(14.6%), 무교(47.8%), 무응답(30.1%)
기후	4계절이 뚜렷한 편으로 내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혼재, 연평균 기온 9~11도 (여름 최고 기온은 32~37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0도 정도)
국가원수	대통령: 밀로쉬 제만(Milo Zeman) (2013년 3월 취임, 2018년 3월 재임) 총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2021년 11월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0-03-22 (자료원 : 체코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90-10-26	항공협정 발효	2020년 11월 24일 한-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약	1995-03-03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투자보장협정	1995-03-16	투자보장협정 발효	
과학기술협정	1995-04-03	과학기술협정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2001-03-16	원자력협력 협정 서명	
사회보장협정	2008-11-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경제협력협정	2009-05-15	경제협력협정 발효	양국 정부는 산업,공업,에너지,정보통신,운송,환경보호,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연구소,기업,전문기구,상공회의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
한-EU FTA	2011-07-01	한-EU FTA 발효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2012-06-01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발효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2014-11-05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발효	양국간 교육 관련 정보 교류, 고등교육기관 협력, 상대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교육분야 협력 및 양국간 음악, 공연, 미술, 도서관, 박물관,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	2019-12-20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 발효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체코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로 함

한국교민 수

2,668 명 (자료원 : 체코 내무부(영주권 및 비자소유자 기준, 2022년 7월말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국과의 주요 인사교류 현황

- 1992. 4. 체코 Vaclav Havel 연방 대통령 내외 국민 방한
- 1994. 10. 체코 Vaclav Klaus 총리 내외 방한
- 1995. 3. 한국 김영삼 대통령 내외 국민 방체
- 2001. 3. 체코 Milos Zeman 총리 내외 방한
- 2003. 7. 한국 고건 국무총리 내외 방체
- 2009. 4. 한국 한승수 국무총리 방체
- 2009. 5. 체코 Vaclav Klaus 대통령 방한(EU 의장국 자격)
- 2011. 10. 체코 Milan Stech 상원의장 방한
- 2012. 3. 체코 Karel Schwarzenberg 외교장관 방한
- 2013. 5. 한국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체
- 2014. 7.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체
- 2015. 2. 체코 Sobotka 총리 방한
- 2015. 12. 한국 박근혜 대통령 방체
- 2016. 8. 한국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방체
- 2016. 11. 체코 Lubomir Zaoralek 외교장관 방한
- 2017. 3. 한국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방체
- 2017. 6. 체코 하마ček 하원의장 방한
- 2017. 9. 제72차 유엔총회(뉴욕) 계기 한-체코 정상회담
- 2017. 10. 한국 국회 대표단(이철희, 황희, 추혜선 김성원 의원) 방체
- 2017. 10.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및 상원의장단 방한 (원전협력)
- 2017. 11. 한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체 (원전사업 협력)
- 2018. 2.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방한
- 2018. 7.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방체 (한-체 공공행정협력포럼)
- 2018. 11.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체
- 2019. 5. 한국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방체 (한-체 경제공동위)
- 2019. 6. 한-V4 외교장관회의(브라티슬라바) 참석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 2019. 6. 한국 김건 국제안보대사 방체 (제3차 한-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 2021. 6. 한국 박병석 국회의장 방체
- 2021. 6. 한국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체
- 2021. 11. 한-체코 정상회담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계기)
- 2022. 6. 한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체
- 2022. 6. 한-체코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
- 2022. 9. 한-체코 외교장관 회담 (유엔총회 참석 계기)

○ 2018년 7월 16일에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체코 공공행정포럼이 개최돼, 한국-체코 양국 정부부처가 양국의 정책 및 행정 우수사례 (전자정부, 주민등록, 사이버 수사, 국가통계 등)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심보균 차관), 인사혁신처, 경찰청

, 조달청, 대구시 등이 참여하고 체코는 내무부, 지역개발부, 경찰청, 프라하시가 참여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27일 G20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로 중간 경유차 프라하를 방문해 28일 체코 바비쉬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을 논의했으며, 체코 동포들을 면담했다.

○ 2019년 6월 7일 강경화 외교 장관은 한-V4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방문 계기, 토마쉬 페트리ček 체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페트리ček 장관은 디지털화, AI, 나노기술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2019년 6월 11일 외교부는 프라하에서 제3차 한-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이버 규범 마련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한-체코 양국 간 협력 지속에 대해 논의했다.

○ 2020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맞아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양국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을 환영했으며, 제만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효율적 대응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향후 전기차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제만 대통령도 수교 30주년이 과학연구, 신기술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2021년 11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36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환영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 원전, 보건분야 등에서 향후 상호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북핵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원전, 전기차, 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체코 측이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

○ 한국-체코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등 MOU 18건 체결: 2015년 12월 한국-체코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개최돼 양국의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고, 산업협력, 보건의료, ICT, 문화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KOTRA는 체코 인베스트, 체코 산업연맹 등과 MOU를 체결 산업, 무역투자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고, 한국전력은 체코의 스코다프라하(SP)는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원전분야 신기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제4차 한국-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2019년 5월 31일 외교부와 체코 산업부의 제4차 한국-체코 경제공동위가 프라하에서 개최됐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블라디미르 바르틀(Vladimir Bartl) 체코 산업부 차관, 정부대표 20명이 참석해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한-체코 항공협정 개정: 2020년 11월 24일 김태진 주체코대사와 까렐 하블리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지난 90년에 체결된 항공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체코 외 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체코 원전사업 MOU 체결 및 협력 교류 활발: 체코정부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원전 3~4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중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우선 추진 중으로 2022년 3월 공식 입찰절차를 개시했다. 2024년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3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평가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현재는 한국의 한수원을 비롯해 프

랑스의 EDF, 미국의 WEC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인근지역인 트레비치에 봉사단 파견, 아이스하키팀 후원, 트레비치 지방상공회의소와 원전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원전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양국 간 원전 협력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7년 10월 체코의 원전특사를 시작으로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원의장이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역량을 확인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당시 총리 내정자)를 만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경제·산업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와는 하블리체 체코 산업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코 전략산업계연합과 원자력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년 6월에는 한국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시켈라 산업부 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 의장 등을 만나 원전 등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한수원을 포함한 한국 9개사(한전기술, 한전연료, 두산E, 한전KPS, 대우건설 등), 체코 21개 기업·기관(ZVVZ, Skoda JS, Chemcomex 등)이 참석하여 총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문화

- 2013년 4월 서울에 주한 체코문화원이 개설됐으며, 2013년 9월에는 체코 카렐대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종학당이 설립됐다. 2013년 12월에는 팔라츠키 대학교 강남대가 한국어 강의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문화 교류에서도 K-Pop 경연대회 및 문화행사 등이 개최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체코에서 한국 영화는 1992년 이래로 꾸준히 해마다 상영되고 있으며, 매년 프라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영화제 FILMASIA에서는 최신 한국 인기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다.

-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체코 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또한, 김치 배틀 행사, 프라하 치맥 페스티벌, 한국-체코 차세대 음악회, 태권도 대회, 비빔밥 페스티벌, 한지공예 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2019년 7월에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비보잉 댄스를 선보이는 'Show Passion Korea' 공연이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으며 프라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10월에는 프라하 시내에서 한국 영화 & 음식 축제가 개최돼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 2022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K-pop 공연과 함께 한식을 선보이는 프라하 한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한국 및 아세안 6개국 영화를 상영하는 2022 ASEAN+3 영화제 행사를 통해 한국영화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3.2	3.03	-5.79	3.5	
명목GDP (십억\$)	248.95	252.5	245.35	282.6	
1인당 GDP (PPP, \$)	41,120.36	42,963.05	40,790.8	43,837	
1인당 명목 GDP (\$)	23,463.6	23,709.18	22,941.9	26,411	
정부부채 (% of GDP)	32.07	30.05	37.81	42	
물가상승률 (%)	2.15	2.85	3.16	3.8	
실업률 (%)	2.24	2	2.54	2.8	
수출액 (백만\$)	202,751.36	199,676.49	192,496.79	227,353.03	
수입액 (백만\$)	185,102.26	179,568.82	171,588.08	212,738.33	
무역수지 (백만\$)	17,649.1	20,107.67	20,908.71	14,614.7	-
외환 보유고 (백만\$)	142,512.3	149,855.1	166,113.2	173,613	
이자율 (%)	1.75	2	0.25	3.7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21.74	22.93	23.2	21.68	

<자료원 : IMF, 체코통계청, 체코중앙은행>

나. 경제 동향

체코 경제는 러우 사태 영향에 따른 에너지, 식료품 중심의 물가상승, 소비 위축 가운데서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 상황 유지로 요약된다.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원부자재 공급 불안, EU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등 경제상황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22년 체코 경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따라 가계 소비, 투자 증가 등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물가 급등 등으로 내년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진 상태다.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러-우 사태 이후 심화되면서, 2021년 7월 인플레이션율은 17.5%, 8월 17.2%를 기록했다. 이는 1989년 개방 이후 30년간 최고치, EU 국가 중에서도 발트 3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은 8월 발표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2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중앙은행은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9차례의 금리(2W repo rate) 인상을 기준금리가 2021년 초 0.25%에서 10월 현재 7%로 인상된 상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2022년 가계 소비는 에너지 가격, 주거비 등 기초 생활비 상승, 이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위축 요인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4.1%를 기록했으나 2022년 0.5%로 하락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경기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4.4 퍼센트 포인트 낮은 72.7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EU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실업률은 2.8%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도 2.5% 수준의 실업률이 전망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명목 임금은 7.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7.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 지속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체코 진출기업의 우선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9%로 양호한 편이나 하반기 수요 위축과 성장 둔화로 체코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22년 연간 성장률을 2.2%로 전망 중이다. 여기에 에너지, 물가 위기 지속 시 2023년 GDP는 본격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태다. 2022년 상반기 산업별 GDP 성장률은 관광 등 서비스 영업 재개로 도소매, 호텔·식당, 운송 부문은 13.3%, 건설 13.3%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도 전년 대비 1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제 전망

2022년 체코 경제는 상반기 가계 소비와 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러-우 사태 발발 및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담이 커진 상태다. 특히 러-우 사태 이전부터 예측된 원부자재 공급 차질, 물류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대응이 중요해진 상태다. 재무부는 '2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3.1%로 전망했으나('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2.2%로 하향 수정한 상태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2023년에는 성장률이 1.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체코 재무부(2022년 8월 발표) : 2022년 2.2% / 2023년 1.1%
- 체코 중앙은행(2021년 8월 발표) : 2022년 2.3% / 2023년 1.1%
- IMF (2022년 7월 발표) : 2022년 2.3% / 2023년 2.0%
- EU집행위 (2022년 4월 발표) : 2022년 1.9% / 2023년 2.7%

'22년 가계소비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가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022년 가계소비 증가율을 0.5%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은 산업 활동 회복 및 이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이 일시 증가했으나 정부의 임금보전 정책, 외국인 노동자 유출 등으로 유럽 타 국가에 비해 체코 노동 시장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22년 실업률을 2.5%로 전망하고 있다. (체코는 EU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 중이며, EU 평균 실업률은 6% 수준)

외환 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체코 코루나(CZK) 가치 방어를 위한 개입으로 당분간 코루나 강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9월 기준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1.25%) 및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2.25%)에 비해 체코 기준 금리는 7%로 높고, 최근 유럽 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루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우 사태 발발 직후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면

서 한때 유로 당 26 코루나에 근접하는 등 환율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체코 중앙은행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현재는 유로 당 24.5 코루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22년 체코 코루나-유로화 평균 환율(1유로당 코루나)을 전년 대비 약 4% 하락한 유로 당 24.6 코루나로 전망 중이. 반면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선호 현상이 더욱 높아져, 달러 가치가 유로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달러 대비 코루나 가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2.9.26. 기준 1 달러 = 25.3 코루나 / 1 유로 = 24.66 코루나

산업 생산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업 성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키우고 있다. 2021년부터 지속된 반도체 이슈 등 공급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가스 및 원유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 업종 중심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다. 러시아발 가스 공급의 급격한 축소, 수력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료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체코 상공회의소 설문조사('22.8월)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응답기업의 18%가 연말까지 고용 감축, 특히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중대형 기업은 27%가 고용 감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로 인상('22.7월) 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부족, 물류비 인상 등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40%를 화석연료로 총당 중인데 천연가스 공급의 약 97%, 원유 공급의 약 5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치다. 체코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LNG 확보, 가스 비축분 증대, 소비 절감 촉구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향후 대러 제재 및 러시아의 공급 중단으로 가스, 원유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가계 지출, 기업 활동 등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체코 재무부는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종전보다 크게 상향 조정한 16.2%로 발표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5,706,970,521
2	슬로바키아	15,339,245,451
3	폴란드	12,280,966,264
4	프랑스	10,363,702,177
5	영국	9,458,076,426
6	오스트리아	9,089,286,349
7	이탈리아	8,154,260,332
8	네덜란드	7,553,671,696
9	스페인	6,389,530,875
10	헝가리	6,104,778,44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3,571,591,875
2	슬로바키아	15,129,467,625
3	폴란드	12,105,876,921
4	프랑스	10,338,926,263
5	영국	9,042,165,047
6	오스트리아	8,619,413,470
7	이탈리아	7,878,064,890
8	네덜란드	7,641,366,730
9	헝가리	6,513,079,098

10	스페인	6,468,597,50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2,821,401,820
2	슬로바키아	14,673,053,975
3	폴란드	12,042,442,772
4	프랑스	9,131,884,824
5	오스트리아	8,026,517,905
6	네덜란드	7,866,061,932
7	영국	7,825,112,887
8	이탈리아	7,635,189,899
9	헝가리	6,367,602,949
10	스페인	4,816,983,39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6,531,538,417
2	중화인민공화국	26,056,157,751
3	폴란드	14,249,508,976
4	슬로바키아	9,219,467,844
5	이탈리아	7,750,509,011
6	프랑스	6,060,728,843
7	러시아	6,045,466,413
8	오스트리아	5,449,018,425
9	네덜란드	5,199,518,853
10	미국	4,684,612,96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4,150,903,573
2	중화인민공화국	28,342,862,007
3	폴란드	13,748,381,933
4	슬로바키아	7,894,203,221
5	이탈리아	7,400,262,313
6	프랑스	5,599,327,250
7	러시아	5,379,053,023
8	네덜란드	5,268,519,512
9	오스트리아	5,060,793,914
10	미국	4,715,106,46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9,710,735,229
2	중화인민공화국	30,980,570,581
3	폴란드	13,499,910,921
4	슬로바키아	7,021,431,676
5	이탈리아	6,949,950,044
6	네덜란드	5,050,119,698
7	프랑스	4,975,501,597
8	오스트리아	4,632,760,772
9	헝가리	4,445,215,664
10	미국	4,316,269,986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240,484,905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450,916,321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71,427,496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5,033,534,460
5	870829	기타	4,954,714,211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587,298,396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369,937,037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45,092,118
9	870899	기타	2,656,861,354
10	940190	부분품	2,597,044,36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7,083,970,669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707,484,987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248,575,447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5,075,412,347
5	870829	기타	5,064,602,291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794,726,263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621,818,889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647,021,642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19,463,011
10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691,957,12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496,308,849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5,854,455,278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579,026,931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520,142,894
5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4,501,614,327
6	870829	기타	4,453,849,487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438,862,900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 1,500cc 이하인 것	4,188,386,499
9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909,306,10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595,235,24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109,445,99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967,918,654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96,116,379
4	300490	기타	3,345,757,207
5	870829	기타	2,695,867,579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602,429,912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52,350,749
8	847170	기억장치	2,505,568,128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263,037,265
10	271121	천연가스	2,254,026,21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192,331,999
2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744,551,836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740,778,312
4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27,432,539
5	300490	기타	3,555,810,170
6	870829	기타	2,620,120,855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499,575,390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278,329,016
9	847170	기억장치	2,062,149,820
10	940190	부분품	1,847,773,93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205,913,118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776,393,420
3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132,154,075
4	300490	기타	3,805,034,616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750,002,672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832,495,171
7	847170	기억장치	2,286,384,650
8	870829	기타	2,260,565,962
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147,227,736
10	392690	기타	1,800,223,663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2,452	864	1,588
2019	2,114	852	1,262
2020	2,694	944	1,750
2021	2,954	1,094	1,860
2022	2,067	683	1,38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131	159	972
2	8138	전산기록매체	263	0	262
3	8422	전동기	94	12	82
4	8352	축전지	19	0	18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100	1	99
6	8269	기타조명기기	89	16	72
7	2140	합성수지	82	3	78
8	7111	원동기	72	19	53
9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95	5	90
10	8423	전원장치	53	4	4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712	80	632
2	8138	전산기록매체	217	0	217
3	8422	전동기	77	10	67
4	8352	축전지	75	0	75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72	1	71
6	8269	기타조명기기	65	12	53
7	2140	합성수지	65	2	63
8	7111	원동기	59	5	54
9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58	3	55
10	8423	전원장치	47	3	4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48	전자현미경	1	140	-140
2	7420	자동차부품	1,131	159	972
3	7112	펌프	15	84	-70
4	8155	분석시험기	4	65	-62
5	2150	합성고무	1	40	-40
6	3203	타이어	27	46	-19
7	7512	밸브	7	41	-34
8	8492	기타 충전 기기 부분품	20	6	14
9	8315	실리콘웨이퍼	2	6	-5
10	7290	기타산업기계	13	24	-1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48	전자현미경	1	88	-87
2	7420	자동차부품	712	80	632
3	7112	펌프	8	41	-33
4	8155	분석시험기	2	40	-38
5	2150	합성고무	0	26	-26
6	3203	타이어	20	22	-2
7	7512	밸브	5	21	-16
8	8492	기타 충전 기기 부분품	0	18	-18
9	8315	실리콘웨이퍼	3	16	-13
10	7290	기타산업기계	8	16	-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리튬, 이온 배터리 전지		
HS Code	8507.60	수입액('21/US\$천)	1,710,651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144,174
선정사유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시장동향	LG화학, 스코다 EV 배터리 공급 등 한국산 배터리 기술을 인정받는 추세		
경쟁동향	주 수입국은 중국, 폴란드, 미국, 독일로 경쟁이 필수		
진출방안	스코다 등 완성차 수요를 기반으로 핀포인트 사업 등 활용		
품목명 2	초음파 센서 부품		
HS Code	8531.80	수입액('21/US\$천)	25,32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134
선정사유	자율주행차 수요 증대에 따라 전방센서 등 관련 부품 유망		
시장동향	초음파 센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유지		
경쟁동향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주요 수입국의 비중이 69.4% 비중 차지		
진출방안	완성차 부품 수요를 기반으로 핀포인트 상담회 등 사업 등 활용		
품목명 3	가정용 의료 및 미용기기		
HS Code	9018	수입액('21/US\$천)	767,63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9,550
선정사유	웨어러블 심전도 진단기 등 모바일 연동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재활치료기기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가정용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지속 성장 중		
경쟁동향	시장 내 높은 인지도를 가진 미국, 독일 등과 경쟁 필수		
진출방안	체코 내 의료기기 유통을 위해서는 CE 뿐만 아니라 체코 식약처(SUKL) 등록 필수		
품목명 4	전기차 충전기		
HS Code	8504.40	수입액('21/US\$천)	1,230,79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71,300
선정사유	전기차 시장 급속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21년 체코 내 전기 충전소는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하였으며, 가정 용 기업용 소형 충전기 수요도 증가 추세		
경쟁동향	독일 및 중국산 충전기들과의 경쟁 불가피		
진출방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강조		
품목명 5	UV살균기		
HS Code	8543.70	수입액('21/US\$천)	385,43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2,423
선정사유	한국산 IT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바이어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편임		
시장동향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살균기에 대한 제품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경쟁동향	중국은 저가로 살균기를 판매하고, 독일/네덜란드 등은 품질 위주의 가격정책을 펴고있음		
진출방안	유럽 진출 시 필요한 인증(CE, RoHAS) 획득은 기본이며 A/S, 현지 언어 적용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		
품목명 6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천)	686,303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9,291
선정사유	K-Beauty 인기 등으로 국내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 추세		
시장동향	세포라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한국산 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판매 중		
경쟁동향	많은 국내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해 있어 국내기업간의 경쟁 역시 심화. 또한 한국산제품은 시장 내 고가 제품으로 구분 중		
진출방안	화장품 유럽 인증(CPNP)를 사전에 취득하여 바이어 접근이 필요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현지 마케팅도 동반되어야 함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체코 정부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건설 산업 투자 확대
시장동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 주요국가의 락다운 조치 등으로 신규수입처 수주 지연, 기존 거래처의 일시적 운영 중단이 이어져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20% 수준 판매 감소 (단, 건설경기 부양책 확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
경쟁동향	시장을 선점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필수
진출방안	EU기금(지역활성화, 교통·인프라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참가

품목명 2	공유경제 활용 서비스
선정사유	과거대비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계층이 증가, 친환경/저 실업률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시장동향	공유오피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를 활용한 다 양한 서비스가 체코 내 활성화 중
경쟁동향	시장을 선점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은 필수이며 신규 서비 스로 인해 체코법과 상충되는지 확인 *전동킥보드는 도로와 인도 사용여부를 가지고 논의 중
진출방안	체코어(영어) 어플을 제공하면서 체코 시장에서 찾기 힘든 서비스로 접근 필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 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 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 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 7)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10. EU 의회, 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 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직전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 (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 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1. 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 4. 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 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2. 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직전협상: 2022. 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 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9. 4.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 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 협상: 2019. 7.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 3. 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 3. 1.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행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힐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자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化妆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

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경향이 발견될 시 EU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자료: EU 집행위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기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대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2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수출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체코는 내륙국가로, 국제 항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항구를 통해 선박 물류가 이동되는데, 전체 물동량의 약 60%는 독일 함부르크항, 약 20%는 슬로베니아 코퍼항, 그리고 나머지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리예카항(크로아티아), 그단스크항(폴란드)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 이들 항구와 체코 간에는 도로 및 철도가 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 체코의 국제 공항은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카를로비바리, 파르두비체 5개 도시에 있다. 이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 국제 공항은 시내에서 자동차로 30~40분 정도 정도 소요되며, 지하철역 Ndra Veleslav역과 프라하 중앙역(Hlavn ndra)에서 각각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1,600~1,800만 명이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가 80% 가까이 급감하였다.

○ 주요 공항 물동량 : 2020년 기준 체코 주요 공항 물동량은 바츨라프 하벨 공항이 52,442톤, 브르노 공항이 4,147톤으로, 바츨라프 공항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나 브르노 공항의 경우 오히려 약 17% 증가했다. 또한 바츨라프 하벨 공항은 2020년 기준 54,163회의 항공기를 운항하였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366만 명이며, 항공기 운항횟수는 65%, 승객수는 80%가 감소한 수치이다. 브르노 공항의 경우 2020년 항공기 운항 2만 6천회, 승객 수 8만 6천 명이다.

3) 유의사항

체코에 수입 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체코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수입 신고는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체코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http://www.eu-gateway.eu/home>

체코 세관은 유럽 내에서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으로 요구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애로사항도 무역관을 통해 종종 접수되고 있다. 체코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체코의 통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

1) 약식 통관

탁송물의 원활한 배송과 행정절차 비용 감소를 위해 관련 통관 당국에 약식 통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 통관절차의 가장 신속한 형태는 지역 통관 절차이며, 이 방식은 수입할 때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직접 배송될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가 지정된 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약식 통관의 경우, 단일 관리 문서(SAD)의 통관당국 제출만이 요구된다. 세관당국의 감사를 허락한다는 조건에서 통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식통관 허가를 낼 수 있다.

2) 정식 통관

체코의 통관 절차는 체코 우편 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지역 외 국가에서 배송된 물품이 우편당국으로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 담당 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세관 조사는 통관 서류 검사, 물품 확인, 수입자 조회 등이며, 물품 확인은 X-ray 검사와 필요한 경우 탁송물 개봉 및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입자는 수입 통관 절차를 직접, 또는 우편 당국 지정 관세사를 통해 진행, JSD(Jednotny spravni doklad -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완료한다. 수입품에 대한 CE 및 DoC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탁송물이 세관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체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3) 우편통관

우편통관의 경우, 22유로 아래 비상업적 목적의 탁송물만이 부가가치세 (VAT - 체코어 DPH) 와 관세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EU외 국가에서 탁송물을 받을 경우 22유로 이상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 150유로 초과인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세에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 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탁송물 수신인에게 있다. 상품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생길 경우, 수신인은 우편 당국으로부터 세관 처리에 관해 통지받으며, 필요 제출 서류(물품 가치 증명서 (예: 인보이스), 물품 목적 및 사용처 문서, 우체국에 세관 처리 위임 시 위임장 등)를 제출하고 탁송물이 배송될 때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 소요 기간에 발생하는 보관료 및 통관비가 추가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체코 세관은 유럽 내에서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KOTRA 프라하 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으로 요구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바이어 및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체코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당 세관원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통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보수적으로 준비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단순 브로슈어, 카탈로그, 책자 등도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22유로 이상인 경우 수신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purpose)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1유로 이상 22유로 이하의 금액으로 적어 송부하는 것이 좋다.

단, 2021년 7월부터 22유로 이하 금액과 상관없이 VAT를 부과하고, 엄격하게 강화될 것이므로 7.1일 이후부터는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UI Logistic Czech s.r.o.

주소	Beskydska 1488, 738 01 Frydek-Mistek
전화번호	+420 558 436 623
이메일	twkim@uilogistic.com
비고	홈페이지 없음

◦ ESA Logistic

주소	Oldrichova 158 272 03 Kladno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14 006 444
이메일	info@esa-logistics.eu
홈페이지	https://esa-logistics.cz

◦ Care & Go s.r.o.

주소	Velenka 89, 289 12 Sadska,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25 598 150
이메일	info@careandgo.com
홈페이지	http://www.careandgo.com

◦ CSKD INTRANS a.s.

주소	Jana Zelivskeho 2,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220 193 200
이메일	info@careandgo.com
홈페이지	http://www.railcargoooperator.cz

◦ Pactra International (Czech) s.r.o.

주소	C.P. 408, 739 53 Hnojník, Czech Republic
전화번호	+ 420 558 919 001
이메일	info@plakor.cz
홈페이지	http://www.plakor.cz

◦ CHB Logistic s.r.o.

주소	Thunovská 179/12, Malá Strana 118 00 Praha 1
전화번호	+420 596 710 390
이메일	info@chb-prague.com
홈페이지	http://www.chb-prague.com/en/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

체코의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설립도 상법에 의해 체코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다만, EU 지침을 준용하여 2021년 5월부터 체코의 보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EU 외 제3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심사법(Act no. 34/2021 Coll.)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

회사법에서 법인설립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민법(Act No. 89/2012)에서 기업, 파트너십 및 협동조합 구성 및 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심사 및 투자 인센티브 요건, 혜택 등은 외국인투자심사법과 투자 인센티브법에서 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심사법 (Act on Foreign Investments Screening) : Act No. 34/2021 Coll.
- 투자 인센티브법 (Investment Incentive Act) : Act No. 72/2000 Coll.,
- 회사법 (Act on Business Corporations): Act No. 90/2012 Coll.
- 민법 (Civil Code) : Act No. 89/2012 Coll.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1998년) 이후 지리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과를 높여왔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FDI 비중이 1990년대 초 약 10%에서 2020년에는 78%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V4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증가는 미개발 지역 투자, 고용 창출, 세금 등 재정 수입 등 여러 면에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체코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를 집중하는 추세다. 2021년 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제조업 분야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다른 분야도 일부 조건 및 혜택이 변경됐다. 또한, 중소기업(중기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이다.

1)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적격비용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 투자의 건에 대해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 투자 분야는 크게 R&D 센터, 제조(첨단기술), 의료분야 제조,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 투자 건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신청 이전의 신규 고용은 인센티브 적용 제외)

2) 투자인센티브 한도(국가 보조금 한도)

○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 보조금의 형태로, EU가 정한 국가 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최대 인센티브 지원금이 제한된다. 2021년 4월 EU 집행위는 소득 및 실업 격차 해소와 불리한 지역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개정된 지역별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2022년 1월부터 발효됐다. 2021년 7월 EU집행위가 2022-2027년 체코의 지역별 지원금 한도액을 승인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2027년까지) 신규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한도가 투자 인센티브로 적용 중이다.

기존에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최대 투자 인센티브 상한선이 대기업 기준 적격비용(투자비용)의 25%였으나, 2022년부터는 지역별로 20%~40%까지로 차등 적용된다.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10%, 20% 추가 적용) 프라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인 중부 보헤미아, 플젠, 남부 보헤미아, 비소치나, 남부 모라비아 지역은 한도가 25%에서 20%로 줄었다. 반면, 과거 광산지역으로 공전전환 지원 대상인 까를로비 바리, 우스티 지역은 한도가 40%로 증가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진출로 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진출한 모라비아-슬레지아 지역도 30%로 증가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로 기존 기업의 확장투자 건은 일부 지역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중부 보헤미아, 플젠, 남부 보헤미아, 남부 모라비아, 비소치나 지역에서는 신규 투자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생산활동을 확장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건은 더 이상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외 지역(프라하 제외)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확장투자 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인센티브 불가 지역: Prague

- 한도 20% 적용: Central Bohemia, Plzen, South Bohemia, Vysocina, South Moravia

- 한도 25% 적용: Tachov, Plzen-sever, Kladno, Melnik

- 한도 30% 적용: Liberec, Hradec Kralove, Pardubice, Olomouc, Moravia-Silesia, Zlin

- 한도 40% 적용: Karlovy Vary Usti nad Labem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 추가 적용

체코 투자청 지역별 한도 적용 지도 참고(사이트 하단 첨부파일): <https://www.czechinvest.org/en/For-Investors/Investment-Incentives>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업 분류 기준은 직원 수, 매출(Turnover), 자산총액(Balance sheet total)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 규모 산출 시 관계사와 해외 지사 등 그룹 전체 규모를 고려한다. (인센티브 신청 시 회사 관계도 제출)

- 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중기업: 직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총액이 4,3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소기업: 직원 50명 미만, 매출 또는 자산총액이 1,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적격비용(Eligible cost)은 인센티브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장기 자산 투자액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자산 투자는 토지, 건물, 기계 장비, 특정 무형자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하며 신규 기계 구매에 최소 50%가 투자되어야 한다.

3)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요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 자격이 부여된다. 대규모 투자 또는 특정 분야 투자의 경우 전략적 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의 인센티브에 추가로 설비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 R&D 센터 (Technology Center)

- 최소 투자액: 일반 투자의 최소 투자액은 대기업의 경우 1,000만 코루나(약 40만 달러), 중기업은 5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50만 코루나이다. 또한, 투자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입에 투자되어야 한다.

- 최소 신규 일자리 창출: 대기업은 최소 20명, 중소기업은 최소 10명이다.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액 2억 코루나(약 8백만 달러, 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최소 70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 최소 신규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요건만 적용되며, 분야별 최소 신규 일자리 창출 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및 데이터 센터 20명, 첨단 수리 센터 50명, 공유 서비스 센터(SSC) 70명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분야별로 절반으로 완화 적용된다.

- 전략적 투자: 첨단 수리 센터(High-tech repair center)만 해당되며, 최소 투자액 2억 코루나(약 8백만 달러,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100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제조업

- 최소 투자액: 최소 투자액은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투자 최소 투자액은 대기업 8,000만 코루나(약 3백만 달러), 중기업은 4,0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000만 코루나이며, 투자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 지역 및 과거 군사 지역과 산업특구 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각 기업 규모별 투자액 기준 요건은 절반으로 축소된다.

- 고부가가치 요건: 최소 80% 이상 직원에게 투자 지역의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선택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 지역 및 과거 군사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선택조건: 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 협력

② R&D 직원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이상 투자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액 20억 코루나(약 8천만 달러, 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250명 이상, 고부가가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첨단기술 제조업

- 투자 분야: 제약,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항공기 및 항공엔진, 우주선 및 관련 장비

- 최소 투자액: 최소 투자액은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기업 일반 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000만 코루나(약 3백만 달러), 중기업은 4,0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000만 코루나이며, 투자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 지역 및 과거 군사 지역과 산업특구 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각 기업 규모별 투자액 요건 기준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 상기에 서술한 고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핵심 구현 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 조건이 추가된다.

○ 전략적 의료용품 제조업

- 최소 투자액: 최소 투자액은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기업 일반 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8,000만 코루나(약 3백만 달러), 중기업은 4,0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000만 코루나이며, 투자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 지역 및 과거 군사 지역과 산업특구 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각 기업 규모별 투자금액 요건 기준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전략적 의료용품 제조업 투자는 고부가가치 요건 불요

4) 투자 인센티브 내용

투자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 유형에 따라 법인세 감면, 고용 보조금, 직원 교육비, 자산 취득 보조금, 자본 투자 보조금(전략적 투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감면

- 전 분야 투자에서 투자 인센티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국가 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 신규 일자리 창출 보조금 (Cash Grant)

- R&D 센터 투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신규 일자리 창출 당 20만 코루나(약 8천 달러)가 지원된다.
- 제조, 첨단기술 제조, 전략적 의약품 제조업 투자 건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 직원 교육비 보조금 (Cash Grant)

- R&D 센터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직원 교육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가 지원된다.
- 제조, 첨단기술 제조, 전략적 의약품 제조업 투자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 자본 투자 보조금(Cash Grant)

- 전략적 투자 및 특정 분야(첨단기술 제조,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일반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신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보조금)에 추가로 자본 투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승인에 따라 자본 투자 보조금 규모가 결정된다.
- R&D 센터 및 첨단 수리센터(High-tech repair center)의 전략적 투자 건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의 최대 20%(최대 5억 코루나, 약 2천만 달러 한도)까지 지원된다.
- 일반 제조업의 전략적 투자, 첨단기술 제조, 전략적 의약품 제조업 투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적격비용의 10% 또는 20% (최대 15억 코루나, 약 6천만 달러 한도)가 지원된다.

5) 최종 정부 심사 후 선별적 승인

기존에는 인센티브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최종으로 인센티브가 결정됐으나, 2019년 투자 인센티브 개정 이후 체코 정부에서 모든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심사 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여부와 규모를 선별 승인하고 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지역 및 체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사회보장세 및 VAT 등 정부예산 기여, 고용 창출, 인프라 개발, R&D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지역 협력, 체코 현지 공급사들과의 협력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신청 기업이 직접 내용을 산출해서 제출해야 한다. 체코 투자청은 체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 심사에서 투자로 창출되는 이점에 대한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한 및 금지(업종)

○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시행

EU의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EU No. 2019/452)에 준하여, 체코는 2021년 5월부터 외국인 투자 심사법(The foreign Investments Screening Act, Act no. 34/2021 Coll.)을 시행중이다. 동 제도를 통해 체코 정부는 자국의 보안 및 공공질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3국(EU외)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심사하며,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심사분야

아래와 같이 군사용품, 이중용도품목 등 체코 안보와 내부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Act no. 34/2021, Section 7에 규정)의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체코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 심사 기간은 위험 정도에 따라 약 90일~135일이 소요된다. (복잡한 건의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음)

- 군사 용품의 제조 및 생산, 연구, 개발
- 위기관리법(Act no. 240/2000)에 의거한 중요 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elements) 운영
- 사이버보안법(Act n. 181/2014)에 의거한 중요 정보 기반 시설 또는 필수 서비스의 정보 통신 시스템 운영
- EU에서 규정(No. 428/2009)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의 생산, 개발

또한, 사전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안 및 공공질서에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코 산업부

에서 예외적으로 투자 이후 최대 5년까지 직권으로 사후 보안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자문 신청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보안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체코 산업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 소요 기간은 약 45일이며, 자문 결과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부의 사후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투자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다. 단,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연간 일일 평균 발행 부수가 10만부 이상인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체코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체코 기업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부 산업특구단지(Special Industrial Zone)은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혜택이 부여된다.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산업특구단지(SIZ)는 현재 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3곳으로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최소 투자액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체코 내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지라기 보다 지방 정부 및 민간 개발사들이 기업들 입주를 위해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주 대상 특정 산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은 일반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다. 산업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돼 있어 투자진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 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 특성, 고용가능한 인력,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임대 및 매물 부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투자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지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중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 Strategic Industrial Zone Kolin-Ovcary

규모	370ha (사용가능 10.5ha)
위치	Prumyslova zona Kolin-Ovcary, 280 02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 당 468코루나 (약 19.2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 Msto Koln / Department of Municipal Property - Ing. Jan Koke (Head of the department) - 주소: Karlovo namesti 78, 280 12 Kolin (Mesto Kolin) - 전화: +420-321-748-263 - 홈페이지: www.zonakolin-ovcary.cz/en - 이메일: jan.kokes@mukolin.cz
비고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4km, D11 고속도로까지 9km, 프라하 공항에서 74km ○ 지자체인 Kolin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도요타(Toyota Motor Manufacturing Czech), Lear, Toyota Tsusho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Zatec Triangle

규모	364ha (사용가능 62.6ha)
위치	Prumyslova zona Triangle, Prumyslova 1062, 438 01 Bitozeves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당 400코루나 (약 16.4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 SPZ Triangle / Contributory organisation of the Usti Region - 주소: Prumyslova zona Triangle, Prumyslova 1062, 438 01 Bitozeves - 이메일: info@industrialzonetriangle.com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triangle.com/en
비고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8km, D8 고속도로 50km, R7도로 인접, 프라하공항에서 60km ○ Usti 지자체가 조성 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넥센타이어, 키스와이어, Hitachi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nov

규모	200ha (사용가능 59.5ha)
위치	Prumyslova zona Mosnov, Mosnov 410, 742 51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Ostrava City Authority -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홈페이지: https://land.ostrava.cz/industrial-zone/ - 이메일: realestate@ostrava.cz
비고	○ 교통 인프라: 철도와 직접 연결, D1 고속도로 10km,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0.5Km ○ 지자체인 Ostrava시가 소유하고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지역이다. 입지한 대표기업으로는 현대 모비스, 프라코, Behr Group, Cromodora Wheels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Holesov

규모	360ha
위치	Holesovska 1691, 769 01 Holesov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y Servis ZK, a.s - Ing. Pavla Sedlkov (Project Manager) - 주소: Holesovsk 1691, 769 01 Holesov - 전화: +420-703-481-923 - 이메일: sedlackova@industryzk.cz - 홈페이지: https://www.zonaholesov.cz/en/
비고	○ 교통 인프라: 3개의 메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고 산업구역 내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 ○ 즐린(Zlin)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Industry Servis ZK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E.ON Distribuce, Pokart spol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t-Joseph

규모	196ha
위치	Havran 139, Havran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utory city of Most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grants) - Mr. Tomas Fiala (Specialist of development and industrial zones) - 주소: 434 69 Most, Radnicn Street 1 - 전화: +420-476-448-560 - 이메일: Tomas.Fiala@mesto-most.cz - 홈페이지: http://www.pz-joseph.eu/e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I/27 (Most - Zatec - Plzen) 국도 인접, R7 고속화도로 4km, E442 국제고속도로 8km (프라하에서 80km, 독일국경에서 30km에 위치) ◦ Most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Yankee Candle, AFSI Europe 등이 있다.

<자료원 : 체코 투자청,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프라하(Prague)

- 면적: 496km²
- 인구: 1,274,562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1.4%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46,152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프라하는 체코 내 최대 FDI 유입 지역으로 주로 글로벌 기업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비즈니스 센터 등이 진출한다. 체코 내 지역 중 최대 대학 졸업자 수를 기록해 유능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나 그만큼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이직률도 높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다. 또한, 다국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거주민의 가처분 소득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 모라비아-실레지아(Moravia-Silesia)

- 면적: 5,430km²
- 인구: 1,177,632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4.0%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4,223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항공 등의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과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한국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 우스티(Usti)

- 면적: 5,339km²
- 인구: 798,754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3.4%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5,655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프라하에서 약 80km에 위치하고 독일과도 가까워 프라하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넥센타이어와 키스вай어(Kiswire)가 진출했으며, 향후 서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 면적: 10,928km²
- 인구: 1,386,299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1.5%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8,359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프라하와 인접한 중심부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조밀한 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네트워크, 숙련 노동력, 다각화된 경제 등이 장점이다.

○ 리베레츠(Liberec)

- 면적: 3,163km²
- 인구: 437,391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1.7%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5,032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 근접한 전략적인 위치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했다. 또한, 나노소재 및 첨단 기술 혁신 연구소를 보유한 리베레츠 기술 대학교가 위치한다.

○ 남부 모라비아(South Moravia)

- 면적: 7,188km²
- 인구: 1,184,345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2.3%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7,069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체코 제2의 도시인 브르노가 위치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와 가까운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전통적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돼 있다. 국제공항을 포함한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브르노의 경우 다수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 우수인력 공급이 용이한 편이다.

○ 플젠(Plzen)

- 면적: 7,649km²
- 인구: 578,573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1.8%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6,252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전통적으로 기계산업 기반이 있고 독일과 가까워 매력적인 투자지역 중 하나이다.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으며 D5 고속도로를 통해 독일과 프라하와의 교통연결이 편리하다.

○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 면적: 4,759km²
- 인구: 542,480명 (2021년말 기준)
- 실업률: 2.3% (2021년 4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6,043코루나 (2021년 기준)
- 특징: 자동차, 전기 장비 및 섬유 제조, 농업 및 서비스 산업 등이 발달한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잠재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9521.68	11010.4	10108.4	6292.55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7560.01	8662.56	4128.15	3142.4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21	6	70,218	31	65,338
2020	14	3	25,121	18	21,936
2021	21	2	156,082	24	124,70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	3	52,527	13	52,59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5	1	12,756	10	11,281
운수 및 창고업	1	1	874	1	894
정보통신업	2	0	16	2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3,945	4	452
교육 서비스업	1	1	100	1	1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1	15,316	8	15,287
도매 및 소매업	4	2	7,452	9	6,640
정보통신업	1	0	9	1	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0	2,344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4	2	140,274	15	111,770
도매 및 소매업	4	0	13,459	9	12,9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	0	2,349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차체 부품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프라코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제

모기업명	(주)프라코
------	--------

○ 동원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도어 프레임
모기업명	동원금속(주)

○ 세종 체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배기시스템
모기업명	세종공업㈜

○ 현대자동차 체코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동희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Chassis, 연료탱크, 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모기업명	(주)동희산업

○ 현대트랜시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시트
모기업명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

○ 한화솔루션/첨단소재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경량-복합 플라스틱(EPP) 원재료 생산 및 경량복합플라스틱 원재료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
모기업명	한화솔루션

○ 넥센타이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PCR 타이어, LTR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삼성전자 체코/슬로바키아 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 제품 판매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제품 판매
모기업명	LG전자(주)

○ 대창시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시트 프레임
모기업명	(주)디에스시

○ GS칼텍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복합PP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제조용)
모기업명	GS칼텍스

○ 두산스코다파워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발전소용 터빈

○ 대한항공 프라하지점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 현대제철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완성차향 자동차용 철강강판 공급, 자동차용 강판 가공(폭재단, 사각재, 용접강판)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현대글로벌비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운수 및 창고업
취급분야	물류, 창고, 운송
모기업명	현대글로벌비스(주)

○ 엔브이에이치 체코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인테리어 파트
모기업명	엔브이에이치코리아

○ 코스와이어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스탠리스 와이어
모기업명	코스와이어

○ 현대엔지니어링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플랜트, 주택, 인프라, 설계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두산인프라코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건설기계장비
모기업명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 기아자동차 체코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판매업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체코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완성차 및 관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한국수력원자력 유럽지사 프라하 사무소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 사무소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모기업명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타이어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용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SK네트웍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재 수입, 판매
모기업명	SK네트웍스

○ 동아이엔지 체코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금형(사출 금형, 프레스 금형) 제조 및 수리
모기업명	동아이엔지 주식회사

○ 팩트라 인터내셔널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운수 및 창고업
취급분야	포워딩, 창고, 운송, 서열, 조립
모기업명	팩트라 인터내셔널

○ 다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시트 부품
모기업명	다스

○ 에스피씨 지맥스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용 흡음재, 단열재, 테이프 등
모기업명	지맥스

○ 와이에스테크윈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공장 자동화 전기파트 설치 및 시운전
모기업명	와이에스테크윈

○ 제일기획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리테일, 마케팅
모기업명	제일기획

○ 삼성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안전벨트
모기업명	삼성

○ 보백 유립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SUB-MATERIALS
모기업명	보백CNS

○ 오스템임플란트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
모기업명	오스템임플란트(주)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개요

회사법상 구분에 따른 형태로 외국기업도 체코 내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회사의 형태 및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조는 법인의 형태인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s.), 협동조합(Cooperatives) 및 유럽연합 내 특수한 형태의 법인인 European Company(S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EEIG) 및 European Cooperative Society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체코의 경우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설립절차 및 요건이 간편할 뿐 아니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하나 혹은 다수의 자연인(Natural person) 또는 법인(Legal person)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20만 코루나에서 1코루나로 변경됐으며 준비금 또한 제한이 없어졌다. 법인 설립 시 체코 내 이미 동일한 회사명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회사 설립 과정은 회사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나 기본적인 절차는 같다. 참고로 개인이 설립하지 않고 회사가 설립할 경우에는 주주가 될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도 추가로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법인형태로는 주식회사로 보통 대기업 설립 시 사용된다. 주식회사 형태는 유로 계좌를 보존시키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등록 자본으로 200만 코루나(약 80,000유로)가 필요하다. 그 외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대부분은 독일어권 국가 투자자들에 의해 세금 관련 이유로 설립된다.

2)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절차

체코 내 법인 설립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서류 준비이다.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적합한 절차를 거쳐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작성 및 문서 배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체코에서 법인 등기를 위해 체코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국문·영문 서류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번역, 작성하게 되며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법인 등기 서류로 제출된다.

- 서류준비 및 공증: 체코에서 독립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위임장,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이며, 자연인의 경우 무범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준비한 문서가 체코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각 서류의 원본(국문)과 영문본을 준비해 공증받은 후,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를 찾아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는 체코에서 체코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반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 법인 주소지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 전에 법인 주소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주소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 신청 전에 토지 및 건물의 구입 또는 임대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이후 외국인은 특별한 제약 없이 체코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체코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영문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당사자 간 서명을 받는다.

- 정관 작성 및 샘플 서명(법인 설립): 정관은 반드시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체코 내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한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을 바탕으로 체코어 정관을 만들 수 있으나,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은 문서 상의 효력이 없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법인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3) 자본금의 규모, (4) 지분 복수 보유 여부, (5) 이사회 명단, 주소 및 회사대표방법 등이 있다. 정관 초안을 완성하고 주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선임된 변호사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정관에 주주를 대신해

서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정관에 서명이 된 순간부터 회사는 법률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의 지위를 획득하며, 이때부터 제한적이기는 하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샘플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회사 대표가 변호사가 보는 가운데 서명을 하고 동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으로, 법인登記 신청 시 샘플 서명을 제출하게 된다.

○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설립자는 법인설립 목적만을 위해 개설된 특별 은행계좌에 출자금을 불입해야 한다. 체코 내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 법인登記 전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즉시 개설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은 1체코 코루나이나, 실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시에는 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00코루나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며, 일반 은행에서 회사 설립 용도의 특별 계좌를 개설해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특별 계좌는 영업허가서에 발급된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Zivnostensky List) 발급: 체코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활동에 맞는 영업허가서가 필요하다. 영업허가서는 각 시청 및 지방행정부 소속 영업 허가소(Trade Office; Zivnostensky Urad)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영업허가소는 신청서를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1,000체코 코루나에 각 활동영역별로 500코루나가 추가된다. 영업허가사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온라인 <http://www.rzp.cz/elpod.html>), 정관, 사업장 임대계약서(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영업활동 영역, 공인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체코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등이며, 사업 종목에 따라 공인대표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등, 공인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영업허가서 신청에는 사업종목에 따라 일반 신청, 허가 등으로 분류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활동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 또는 사업책임자의 고용 계약서와 전문자격증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 상업 등기소 등록(Commercial Register): 법인은 각각의 등기법원(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의 집행기구는, 설립서류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창립 6개월 이내에 상업 등기소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등기소 의무 표준 신청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등기법원은 부당한 지체 없이 회사를 등록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등록 후에는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www.justice.cz)에서 등록된 법인을 검색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등록할 각 정보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설립의 타당성, 설립자의 존재 여부(본국의 법인등기증 등), 설립자를 위해 활동할 대표의 권한 등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발행한 지 3개월 이내)

- 설립 서류(설립자 증서, 회사설립계약서, 정관 등)
- 법인의 법정최소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증거 (일반적으로 관련 은행 입금증서)
- 집행기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서명한 진술서, 구성원의 세부사항을 상업 등기소에 등록에 대한 각 구성원의 동의서
- 각 대표자 및 감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발행한 지 3개월 이내)
- 사업활동과 관련된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 사업장 임대계약서(공증 및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 상기 서류나 신청서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현지 변호사 등)에 대한 위임장

○ 납세번호(DIC) 발급 신청: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세 등록마감은 회사설립이 완료 후 15일 이내이며 국세청(Tax Office)에 등록 후 회사는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No. 235/2004)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Turnover)가 1백만 체코 코루나를 초과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기간은 부가가치세 납세자 의무가 발생한 날(연간 매출액이 1백만 초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등록기간 없이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 납부 등록: 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고용주분) 납부를 위해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종업원 고용 후 8일 이내에 지역별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하고 또한 8일 이내에 의무 의료보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보험사에 의료보험을 등록해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실제 소유자 등록: 기업이 범죄나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경우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EU AML(Anti-Money Laundering) 유럽지침을 기반해 2018년 1월부터 기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등록 제도가 발효됐다. 모든 회사는 2019년 1월까지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 실질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소유주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등기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포함돼야 할 정보는 실소유주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Rodné slo). 국적, 기업과 실소유주의 관계 증빙 등이다. 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돈세탁 방지 관련하여 고객의 신원조사가 요청된 경우에만 특정기관과 개인에게 공유된다. 부동산 업체나 금융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 실체(기업)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소유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및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데이터 메일박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 및 수신하기 위해 각자의 데이터 메일박스를 보유하게 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상업 등기소 등록 후 각 법인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며,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주소로 고유 로그인 정보가 발송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세금 등록 및 세금신고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보낸 후 10일 이 지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를 정기적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사

외국기업의 지사(Branch Office)는 체코법인(Czech legal entity)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해당 외국회사를 대신해 의무가 발생한다. 본사(외국기업)를 대신해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인수 및 판매, 부동산 취득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의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점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결정으로 쉽게 해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프로젝트성 일을 하기 위해선 해산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인보다 적합한 진출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점의 지점장은 모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지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사 설립: 지사설립은 법인 등록 절차와 유사하며,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영업허가서 발급 후 지점 등록신청서에 지점의 향후 활동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상업등기소 등록 후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립자의 설립각서나 자본금 예치가 필요 없다. 지점명은 모회사명 뒤에 지점이라는 의미의 'odstepny zavod'가 붙는다

연락사무소

체코에서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회사형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사를 설립해 연락사무소로 운영 가능하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p> <p>국가의 신용도와 미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체코의 신용등급은 1997년~1998년의 재정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체코 신용등급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체코의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위험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2년 5월 Fitch는 체코의 장기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국가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등급) AA-, (전망) Stable - Fitch: (등급) AA-, (전망) Negative - Moody's: (등급) Aa3, (전망) Stable * 자료: 체코 중앙은행, trading economics (2022년 5월 기준) <p>2)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인센티브 개정 :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투자 인센티브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승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검토기간으로 인센티브 진행 기간도 더 길어졌다. 체코정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지역에 주는 이점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투자 인센티브 신청 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까다로운 비자발급 : 현지 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Employee Card)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 시 필요서류는 모두 체코어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나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자발급에 상당한 기간(4~5개월 정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비자 90일 기간을 지나서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다른 국가로 나갔다 오는 경우도 빈번하며, 무비자로 인해 여러가지 업무적인 제약 및 가족들의 입국, 차량 구입 등에 대한 제약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진행 시 번역 및 인증에 시간이 필요한 서류를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비자연장 이전 만료시기 확인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노무관리의 어려움 : 2022년 1분기 체코 실업률은 2.5%(추정치)로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다수의 기업에서 적절한 인력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진출기업이 산업특구지역이나 동중업체 진출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미 그 지역의 취업가능인구가 제한적인 점, 체코인의 특성상 거주지역 주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성향이 강해 타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그 외 임금 및 복지비용 등의 노무비 상승 및 빈번한 이직도 노무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코 투자진출 시 투자 고려 지역의 가용 노동력 및 임금상승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p>3) 분쟁해결 내용없음</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체코의 주식회사(a.s.: Akciova Spolecnost / Joint Stock Company)는 등록자본금이 특정 액면가의 주식으로 분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설립된다.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작성한 정관으로 설립되며,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Akciova spolecnost” 혹은 주식회사의 약자인 “Akc. Spol.”, “a.s.”를 포함한다.

○ 주식발행

주식회사는 주식증서 또는 장부상 주식의 형태로 무기명 또는 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무기명 주식증서는 금지됐고 기존의 무기명 주식증서는 은행에 동결(예치)하거나 장부상 주식으로 교환해야 한다.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제한이 없으나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양도 승인 요구 등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는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기명주식 증서는 구두, 서면, 계약, 배

서, 주식의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장부상 주식은 새로운 주주가 중앙증권예탁원에 등록됨으로써 양도된다.

○ 등록자본

최소 등록자본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이며, 특별법에 의해 유로화 장부기록이 허용되는 회사의 경우 8만 유로이다. 회사등록을 상업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그 이전)에 등록자본의 최소 30%가 불입 완료돼야 한다.

○ 집행기구

주식회사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 임원은 주주총회(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감사회)가 선출하고 해임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활동 및 주식회사 운영사항을 감사하는 감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회사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감사회 구성원 1/3을 직원이 선출한다. 이외에,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감사회 대신 관리위원회 및 단독 이사를 둘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s.r.o.: Spolecnost s Rucenim Omezenym /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체코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형태의 한 가지로,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선택하는 회사 설립방식이다. 설립자가 1인이면 회사 설립증서(Founder's deed)를 작성하고 설립자가 50명 이하 또는 그룹인 경우,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한다. 이러한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회사명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는 행정적인 약자 spol. S.r.o.“ 혹은 s.r.o.“가 포함된다.

○ 등록자본

회사의 등록자본은 주주가 제공한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각 주주가 출자하는 최소 등록자본은 1코루나이이다. 그러나 적은 출자금의 경우 파산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법인설립 시 일반적으로 최소 1만 코루나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회사를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현물 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현물 출자, 전문가가 결정한 가치, 그 가치를 결정한 전문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최소 납입 출자금의 30%는 불입되어야 한다.

○ 지분관계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주의 회사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지분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지분당 투표수는 1코루나당 1투표권(조합규약에 의거,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음)이며, 부채에 대한 책임은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 지위에 따라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쉽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양도가 제한되지 않고 조건이 붙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공용인증서(Common Certificate)"라 불리는 공인증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

○ 집행기구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유한회사의 집행기구는 한 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이사 수가 제한되지 않지만,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에 이사의 수가 명시돼야 한다. 상임이사는 주주총회(회사의 최고 기구)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독 주주가 임명한다. 각 상임이사는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C: Osoba Samostatne Vydelečne Cinna)는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설립등기 필요 없이 영업 허가서(Trade license) 등록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기업이익금 및 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자유로우나,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통상 체코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 허가서를 획득해야 하며 영업허가 신청에는 사업종류에 따라 일반 신청 부분과 특별허가 신청 부분이 있다.

○ 영업 허가서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출(이름, 국적, ID 넘버, 생일, 영구거주 정보, 체코에서 거주와 거주 허가증서, 체코 내 사업장소와 구체적인 분야 기재)
- 무범죄경력 증명서(공증 번역 필요, 3개월 이내의 문서만 효력)
- 외국인일 경우 거주허가증 제출(장기체류 비자 또는 장기 거주허가증)
- 사업장에 대한 법적 증빙(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거주 허가증이 필요하고 거주 허가 기간까지 영업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기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업 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 임시 확인서(신청자가 영업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장기거주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시 허가서는 제한적으로 유효하며, 임시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기거주 허가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KPMG (Korean Desk)

전화번호	+420)222-123-101
주소	Pobrezni 1a, 186 00 Praha 8
홈페이지	http://www.kpmg.cz
이메일	hhhwang@kpmg.c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황현동 회계사)

○ Deloitte (Korean Desk)

전화번호	+420)246042500
주소	Churchill I, Italsk´ 2581/67, 120 00 Prague 2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cz/en
이메일	jinhjeong@deloittec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정진호 회계사)

○ Kinstellar

전화번호	+420)221622185
주소	Palac Myslbek, Na Prikope 19, 110 00 Prague 1
홈페이지	https://www.kinstellar.com/locations/detail/prague-czech-republic
이메일	miyoung.park@kinstel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미영 변호사)
비고	이메일: miyoung.park@kinstellar.com

o AK Janousek

전화번호	+420)607-909-192
주소	Badeniho 291/3, 160 00, Prague 6
홈페이지	https://www.janousekadvokat.cz/
이메일	jiri.janousek@janousekadvokat.cz

o Dentons Europe CS LLP

전화번호	+420)236-082-111
주소	V Celnici 1034/6, Prague 1, 110 00
홈페이지	http://www.dentons.com
이메일	prague@dentons.com

o Havel & Partners

전화번호	+420)255-000-111
주소	Florentinum, reception A Na Florenci 2116/15,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havelpartners.cz/en/
이메일	office@havelpartners.cz

o Iora Legal, Advokatni kancelar

전화번호	+420)606810032
주소	Novodvorska 1010/14, 142 00 Prague 4
홈페이지	http://www.iora.cz
이메일	petr@iora.cz

o MOORE (Korean Desk)

전화번호	+420)605446404
주소	Karolinska 661/4, 186 00 Prague 8
홈페이지	https://www.moore-eu-asia.com/kr
이메일	lyeon.rim@moore-czec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리안 데스크 담당자- 임련강 매니저- 이메일: lyeon.rim@moore-czech.cz
----	---

<자료원 : 각 회계/법무 법인 홈페이지, 프라하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체코 코루나는 완전하게 태환 가능하며 2017년 4월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코 중앙은행은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자 외환시장에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킨 바 있다.

○ 2013년 11월 ~ 2017년 4월까지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자, 2013년 11월 체코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정책 수단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시작했다. 외환시장 개입 이전(2012~2013년) 유로당 24.7~25.9코루나 수준이었던 환율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유로당 27코루나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체코 코루나의 평가절하로 수출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2016년말 원유가격 상승으로 식품, 연료가격 및 임금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초과했으며, 환율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투입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7년 4월 6일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을 결정했다. 외환시장 개입 중단으로 코루나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게 되었으나,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필요하다면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최근 환율 변동 추이

2020년 초반에 상승 추세였던 코루나 가치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안전자산(달러, 유로화 등) 선호로 하락하면서 2020년 평균 환율은 1유로당 26.44코루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경기 회복세와 함께 하반기부터 체코 기준 금리와 유럽중앙은행(ECB) 기준 금리 차이(4.5%p)의 확대로 유로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체코 코루나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져, 2021년 평균 환율은 1유로당 25.65코루나를 기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환율이 1유로당 26코루나로 급락했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3월초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다시 개입하면서 환율도 유로당 24코루나 수준을 회복했다. 체코 재무부는 2022년 4월 경제전망에서 금리 격차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도 어느정도 안정화되면서 체코 코루나의 점진적인 강세를 예상하고 2022년 평균 환율을 유로당 24.4코루나로 전망했다.

외환 규제

체코의 외환관리는 19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코루나화의 완전 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 거래의 완전 자유화 및 자본 거래의 자유화가 실시(IMF 8조 국)됐으며, 체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 계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 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준비금(reserve fund)과 원천징수세 납부금을 제외하고 체코의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23.726코루나 (2022년 5월 9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69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35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4.1
비고	<p>2022년 체코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40코루나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6,200코루나이다. 체코 통계청 자료 기준 2021년 체코의 월평균 임금은 37,839코루나(전년대비 6.1% 인상)이며, 지역별 임금 동향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지역별 월평균 임금 동향 (체코 코루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Prague): 46,152 -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38,359 - 남부 보헤미아(South Bohemia): 34,882 - 플젠(Plzen): 36,252 -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 33,165 - 우스티(Usti): 35,655 - 리베레츠(Liberec): 35,032 -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36,043 - 파르두비체(Pardubice): 34,053 - 비소치나(Vysocina): 35,073 - 남부 모라비아(South Moravia): 37,069 - 올로모우츠(Olomouc): 34,537 - 즐린(Zlin): 33,826 - 모라비아-슬레지아(Moravia-Silesia): 34,223 				

<자료원 : Hays Salary Guide 2022, 체코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노동법 및 고용관계 관련 법규
 - 노동법(The Labour Code) Act No. 262/2006 Coll.,
 - 고용법(The Employment Act) Act No. 435/2004 Coll.,
 - 노동감독법(Labour Inspection) Act No. 251/2005 Coll.,
 - 최저임금 및 위험근무수당 관련 법령(Government Decree on Minimum Wage and the Lowest Levels of Guaranteed Wage, Definition of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and Extra Pay for Work in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Decree No. 567/2006
- 노동계약 포함내용: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 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수습기간,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이다.
- 노동계약 기간: 계약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다. 기간제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첫 계약 포함 최대 3회)하다. 수습기간은 일반직은 3개월이며, 관리직은 6개월까지이다.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초과근무 제외)은 주당 40시간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휴식시간: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4.5시간 연속 근무 시 최소 30분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교대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는 고용자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8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요청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 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가

- 연차휴가: 노동법 상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계약해지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연간 5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노동법 개정(No. 285/2020)으로 연차휴가가 기존의 근무일 기준에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간 최소 4주 연차휴가는 동일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12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 출산 및 육아 휴직: 출산 휴가는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최근 2년 이내 근속 일수가 270일(약 1년) 이상인 경우 출산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시행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정부지원금을 받음), 육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병가: 병가의 경우 처음 14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한다. 15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해고

노동법상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 해지 통보(고용주에 의한 해고, 직원에 의한 사직), 노동법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즉시 해지, 수습기간 내의 해지, 기간제 고용계약의 만료, 직원의 사망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직원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허가 만료, 추방, 근로 허가(Work permit) 또는 근로를 위한 장기비자 만료로 인해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 고용주에 의한 해고: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체코 노동법 52조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된다. 해고 사유는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구조변경에 따른 근로자 수 감축,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능력 상실,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서면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해지 통지: 고용주나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통지한 날짜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금

체코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이 노동법 52조의 사유로 고용주에 의해 종료되거나, 혹은 같은 사유로 합의에 의해 근로 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분의 평균급여를, 2년 이상이면 3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의료진단서를 토대로 근로자가 산업 재해나 직업 질병, 또는 직업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 더 이상 현재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작업장이 최대 유해물질 노출 최대 허용 한도 수준에 이르러 관할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용관계가 해지되면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최소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체코인뿐만 아니라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증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체코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료비는 대부분 무료(미용성형, 침술, 미용목적의 치과 치료 제외)이다.

체코에서 건강보험(Zdravotni Pojisteni)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건강보험 가입 시 7곳의 보험회사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 요율

- 건강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13.5%로 근로자 4.5%, 고용주는 9%를 부담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3.5%를 부담한다.

○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경우

- 26세 이하의 부양 자녀
- 노령연금 수령자 및 장애연금 수혜자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 중인 경우
- 최대 7세까지의 아동 또는 15세까지의 두 명의 아동을 전일제로 돌보는 사람
- 노동사무소에 등록된 구직자
- 저소득층으로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과 보호자

고용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체코에서 지난 2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소득활동으로 사회보장성을 납부한 경우 실업수당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EU 시민으로서 거주 비자를 소유하거나 EU가 아닌 제3국 시민의 경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하며 동일하게 지난 3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 고용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 1.2%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2%를 부담한다.

○ 실업수당

-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는 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5개월, 50세에서 55세까지는 8개월, 55세 이상인 경우는 11개월이다.
- 실업수당 및 재교육 수당 금액은 이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처음 2개월은 이전 평균 근로소득(세후기준)의 65%, 그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로 산정된다. 단, 심각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 기간 이전 평균 근로소득의 45%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이전 보험료 기준의 처음 2개월은 65%, 그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Accident at work, Pracovni uraz)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로, 작업장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상해도 포함된다. 단, 출퇴근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업병과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종업원이 입은 피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매 분기별로 직원 수와 임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 계약 체결 시 모든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Nemoc z povolani)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직업병으로 간주되는 질병은 정부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피부질환 등 6가지 분야의 85가지의 직업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병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보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직업병은 체코 내 18곳이 있는 직업병 센터(Stredisko nemoci z povolani)에서만 진단 권한이 있으며, 일반 의사를 방문해 직업병 센터 방문 진단서를 발급해 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 자격조건

- 업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 혹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고
-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직원이 부상을 입어야 한다.
- 부상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 직원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 직원이 안전규정을 심각하기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직원은 사고 당시 취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부주의는 무모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상

- 수입상실 대한 보상: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불가한 경우 질병 보험이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은 사고 이전 급여를 기초로 결정된다.
- 고통에 대한 보상: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일회성으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금액은 직업병 센터의 의학적 평가 점수에 의해 산정된다.
- 치료비 보상: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치료비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약품 비용,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 손상에 대한 보상: 산업재해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품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 수하물, 차량 등의 물품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활동(예를 들면 가족 돌보기)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사망 보상: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치료비, 장례비, 유족 생활비, 일시 지급 위로금 등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금보험(노령연금, Starobni duchod)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연금보험은 체코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며, 65세 이상부터 연금보험

납부기간을 만족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 요율

- 연금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총 28%로, 고용주는 21.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6.5%를 부담한다.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28%를 부담한다.

- 연금보험 납부 기간(피보험 기간)

- 납부기간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2018년 이후인 경우 35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질병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보험(Nemocenske pojisteni)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질병보험은 가입은 의무(고용주가 부담)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병보험 가입자는 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아픈 가족구성원 또는 학교폐쇄 등의 요인으로 아동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질병보험 요율

- 질병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2.1%로,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다.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자발적) 보험료 기준의 2.1%를 부담한다.

- 질병보험 혜택

- 근로자는 고용계약 첫날부터 질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보험 납부 후 3개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병가를 낸 경우) 14일째까지는 유급으로 고용주가 임금의 60%를 부담하며, 15일째부터는 질병보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15일째부터 질병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 한도 및 신고

- 사회보장성 보험 한도: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보험 적용대상 소득의 한도(체코 월 평균임금의 48배)가 설정돼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 한도 금액까지만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 2022년 사회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1,867,728코루나가 적용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회보장세 신고: 근로자의 채용 또는 퇴직이 발생한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장보험은 지역별 사회보장보험공단(CSSZ)에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 건강보험 회사에 따라 VZP, RBP, OZP 등 다양한 보험사에 신청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세 대상 및 과세소득: 체코에 등록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인 관리조직이 있는 기업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법인세 대상이다. 법인세는 체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및 비거주자의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 법인세율: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9%이다. 기본투자금(Basic Investment Funds)에는 법인 소득 세율 5%가 적용되고 특정 연기금(Pension Funds)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기간 및 납부: 과세기간은 역년* 또는 회계연도(세무당국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이며, 세금신고서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직전 세금 부과액이 3만 코루나(약 1,2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선납할 의무가 없으며, 3만 코루나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 세금 부과액의 일부를 선납해야 한다.

*역년: 책력에서 정한 일 년. 태양력에서는 평년이 365일, 윤년이 366일이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대상 및 과세소득: 체코 거주자(체코에서 지난 12개월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Non-residents)는 체코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본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된다.

○ 소득세율: 2021년 1월부터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Super Gross Wage* 제도가 폐지되고 2단계 누진세율(15%, 23%)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 기준은 체코의 연간 평균임금의 4배(월 평균임금의 48배)로 설정되기 때문에 매년 기준 금액이 변경된다. 2022년 기준은 186만7728 코루나(약 7만3000달러), 2023년 기준은 193만5552코루나(약 7만5600달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 이하 소득은 15%,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Super Gross Wage: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 부담분을 포함한 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자가 취득하지 않는 고용주 부담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총급여(Gross Wage) 대비 발생하는 실제 소득세가 적용 세율보다 높아짐.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체코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체코지사에게 직접 고용된 외국인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현지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점)는 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체하는 연말정산서를 준비해 준다. 외국 회사가 계약에 따라 체코 회사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반기 또는 분기별 선급금을 납부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고용주 총 33.8%, 근로자 총 11%이다.

- 건강보험: 13.5%(고용주 9%, 근로자 4.5%)

- 사회보장보험

· 연금: 28%(고용주 21.5, 근로자 6.5%)

· 질병보험: 2.1%(고용주 2.1%, 근로자 0%)

· 실업보험: 1.2%(고용주 1.2%, 근로자 0%)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대상: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U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물품,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체코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직전 12개월 동안 매출(Turnover)이 100만 코루나(약 4만 달러, 2022년까지)를 초과하는 업체는 VAT 납부자로 등록 후 VAT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2년 체코 정부는 물가상승 반영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04년 이후 동결된 VAT 의무 등록 기준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VAT 의무 등록 기준이 (전년도 매출 기준) 200만 코루나로 인상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율: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21%이며, 품목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15%, 10%로 부가가치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15% 부가세 적용 품목은 식료품, 음료,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s) 등이며, 10% 적용 품목은 영유아용 식품, 서적 등이다. 또한, 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 및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대해서는 VAT 인하가 시행되어 숙박, 요식업, 미용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 15%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항공료 등
- 10% 유아용 식품, 서적,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숙박 서비스, 요식업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미용 서비스, 자전거 수리 서비스 등

기본 과세 보고기간은 1개월이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 보고기간을 분기로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온라인 세금포털(<https://adisspr.mfcr.cz/>)에서 가능하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주 예산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부과하는 간접세 중 하나다.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며, 세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는 2010년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되다가 체코 보건부, WH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해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재무부가 2020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를 인상했다.

- 주요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및 세율
 - 담배: 세율 30%, 1개당 1.61코루나 부과 (최소 세금금액 1개당 최소 2.90코루나)
 - 주류: 40% 알코올 함유 제품의 경우 0.5리터당 64.5코루나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체코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체코 문화부에서, 산업 재산권은 체코 산업재산권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1)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은 창작자(작가, 화가, 예술가 등)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로 저작권법(Act No. 121/2000 Coll.)에 의해 보호되며, 체코 문화부의 저작권법 부서에서 관할한다.

- 대상: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문학, 음악 및 미술 작품 등의 저작물, 공연에 대한 공연 예술가의 권리, 음반에 대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 보호기간: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한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된다.

- 보호규정: 저작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저작물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물 무단사용 금지, 시장에서 불법 복제물 철회, 손해 및 부당이익 청구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화부 저작권 관련 내용 참고: <https://www.mkcr.cz/copyright-15.html?lang=en>

2)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체코에서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창작물(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산업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이 있다.

○ 상표(Trademark):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이름, 색상, 그림, 문자, 숫자 또는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등)는 상표권법(Act No. 441/2003)으로 보호된다.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를 지정하거나 사용할 독점적 권리가 있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마지막 1년 이내에 기간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요청을 할 수 있다.

○ 특허(Patent): 특허는 새로운 발명 활동의 결과로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적용된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생산된 물질, 의약품, 생명 공학 공정 및 이를 통해 얻은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발견이나 과학적 이론, 컴퓨터 프로그램, 식물과 동물의 새로운 품종, 인간과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는 불가능 하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유효하며, 특허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실용신안(Utility model): 단순한 전문 기술을 넘어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은 실용 신안에 의해 보호된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절차상 차이로,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창작성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용신안권 등록이 특허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 반면,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독점권이 적용되며, 실용신안권의 최대 유효기간은 특허 유효기간의 절반인 10년(최초 보호기간 4년, 이후 3년 단위로 최대 2회 갱신 가능)이다.

○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구조 또는 재료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구성된 제품의 외관이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가진 경우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품의 외관상 특성으로 제품의 기술적,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디자인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률(Act. No. 207/2000)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될 수 있으며, 이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과 개성이 기본 조건이 된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3) 체코 산업재산권 사무소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체코 산업재산권 사무소는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산업재산권 관리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체코 산업재산권 사무소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 UPV)

- 주소: Antonna ermka 2a, 160 68 Prague

- 전화: +420-220-383-120

- 이메일: helpdesk@upv.cz

- 홈페이지: <https://upv.gov.cz/en>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체코에서 법인의 철수는 상업등기에서 법인을 말소하는 날로부터 법인을 종료(Termination), 즉 폐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을 상업등기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산(Dissolu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은 청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은 민법(Act No. 89/2012)과 회사법(Act No. 90/2012)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법인 활동 종료의 경우 법인 설립기간의 만료, 법인설립의 사업목적 달성, 법인관계 기관의 해산결정, 관련조직의 사업변경 또는 분할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불법적인 행위,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의 요청 등 때문에 법원에 의해 폐업이 결정될 수 있다.

1) 청산 없는 해산 (법인 전환)

청산 없는 해산은 합병, 분할, 파트너에게 자산 이전 등 법인의 승계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Act No. 89/2012)의 174~184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업 및 협동조합 전환에 관한 법률(Act No.125/2008)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전환은 상업등기 전환 등록일보다 먼저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승계된 법인의 회계상 활동이 시작되는 날을 상업등기의 전환 등록일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법인 청산(Liquidation)

법인 청산은 대부분 소유주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상업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 이뤄지며,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소요된다. 유한회사 청산의 경우 법인 폐지에 대한 총회(또는 단독 소유자)의 결정에 관한 공증문서를 준비 후 상업등기소에 청산절차 시작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취소 등록, 직원의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 취소 등록, 청산절차 시작 후 재무제표 작성 등 세무와 회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상업등기소에서 법인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 진행은 법인 등기 해지뿐 아니라 세무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등 법원, 재무부, 세관 등 제출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고 절차 또한 외국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 내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법인 파산

체코 파산법(Act No.182/2006 Coll.)에 의해 유동성 조건(Liquidity test) 또는 대차대조표 조건(Balance Sheet Test)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성 조건의 경우, ① 최소 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② 30일이 지난 채무가 있으며, ③ 이러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차대조표 조건의 경우, ① 최소 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② 동시에 총 채무총액이 자산의 가치(향후 기업운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 포함)를 초과할 경우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는 파산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 없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파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자도 해당 법인의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산 절차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시작되며, 법원의 판결로 파산이 결정된다. 파산절차는 체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파산 등록부(<https://isir.justice.cz/>)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4) 지사(Branch) 철수

지사(체코어: organizan sloka)는 독립적인 법인(Legal entity) 아니며 외국 모회사를 대표해 모회사를 대신해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지사는 외국 모기업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며, 철수 시 특별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사 철수 이전에 지사 존재 시 관련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권장되며 세금 등록 취소, 영업 허가서 종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체코 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이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정도인 521만 명이다. 체코의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명목 기준 2만 달러를 넘었으며, 2021년 기준(잠정치) 1인당 명목 GDP는 2만 6,378달러,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는 4만 4,260달러로 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높고 일부 서유럽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자료 : World Bank)

*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2,940), 스페인 (40,775), 포르투갈(35,888) 보다 높고 한국(46,918), 이태리(45,935)에 근접한 수준이고, 명목 1인당 GDP 역시 포르투갈 (24,262)보다 높고, 한국(34,757), 스페인(30,115)와 견줄만한 수준으로 중동부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 중

체코 정부는 서유럽 대비 경제 격차를 줄이고자 최저임금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고, 체코 실업률도 유럽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2019년 가계 총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가계소비도 2.7%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계소비가 전년대비 6.8% 감소했다. 2021년에는 방역조치 완화, 저축액 증가 등에 따라 가계소비가 4.4%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2022년 2월 러-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10%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2022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가계소비가 둔화(체코 재무부 0.5% 증가 전망)가 예상된다.

<자료원 : 체코 통계청, IMF, 체코 재무부>

소비 성향

체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총동구매 성향이 약하고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편으로, 상품 구입 시 가격 대비 품질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품질 및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성향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 수준은 월평균 명목 임금의 경우 2022년 2분기 기준 40,086코루나(약 1,571달러) 정도로 서유럽 보다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식주 비용,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적음) 등을 감안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과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 프라하의 경우 2019년 구매력기준(PPS) 1인당 GDP가 EU평균의 205%로 EU 지역 중에도 높은 수준(Eurostat 2021년 3월 자료)을 보이고 있다.

2020년~2021년 1분기까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점의 영업제한, 소득 및 재정상태의 불확실성 증가는 소비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21년 5월부터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팬데믹 기간 중 저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이 회복되었으나 2022년 2월 러-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심화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가계 부담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태다.

○ 소비자 구매 성향

유럽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에서 보듯 고용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2017년~2019년 매년 전년대비 7%~9%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반적인 가계소비도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성향이 증가했고 필수재의 경우 PB제품 등 저렴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필수재가 아닌 개인적인 만족을 주는 기호품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제품 선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팬데믹, 전쟁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체코 소비자들도 건강, 환경, 상생 등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친환경 재료 및 포장재 사용, 유기농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소비활동에 중요 요소로 점차 자리 잡고 있어 체코 기업들도 판매 제품의 생산, 포장, 유통에서 친환경적 접근을 확대하는 추세다.

○ 온라인 구매 증가

체코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는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은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다. 체코 전자상거래협회(APEK) 및 경제지인 Heureka.cz에 따르면 체코는 유럽에서 온라인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3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와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더 활성화되면서 2020년 체코 온라인 시장 규모는 1,950억 코루나(약 90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의 기록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도 전년대비 14% 성장을 기록했다. 향후에도 온라인 구매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소비재 등 진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체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실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온라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제품이며, 그 외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 취미용품, 미용, 건강제품 역시 온라인으로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Tesco, Lidl, DM 등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판매 개시 및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여 체코 최대 온라인 몰인 Alza.cz도 식료품 판매를 시작하고, 최대 온라인 식료품 쇼핑몰인 rohlik.cz도 전년대비 높은 매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코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집으로 직접 배달 받기 보다 오프라인 매장 또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주문한 제품을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배달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대한 불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젊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결제(카드, 구글페이 등)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소비재의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즌은 블랙프라이데이 및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수입상들이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하는 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06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2016년 부터 넥센타이어가 자테츠 지역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단행,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제품 및 진출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고, 삼성전자, LG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덕분에 대기업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아진 상태다.

뷰티 용품 및 화장품도 체코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Sephora, Douglas, Notino 등 체코의 주요 화장품 전문 유통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K-Beauty'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 중이며, SNS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한국 화장품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 마스크팩, 토너, 세럼, 아이크림, BB크림 스크럽 제품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들도 전 세계적인 K-POP, 한류 인기에 힘입어 체코에서도 일부 팬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쌓아가는 상태다. 한-체코 K-POP 등 문화행사들도 이러한 인기에 기여하고 있고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체코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추세이다.

한국 식당은 프라하 지역에 20여개, 한국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도 7개 내외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식은 다소 고가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및 중국 음식만큼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채식 및 건강식 트렌드, 한류 인지도 확산 속에 한식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김치를 재료로 한 메뉴 또는 김치를 판매하는 프라하 현지 식당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국적이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한식을 찾는 현지인도 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체코 업체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기존 거래선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좋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에는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쉽다는 이점도 있다.

한편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 바이어들도 기존 거래선 외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부유럽에 속한 체코는 이미 개방화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한국 기업이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 특성과 수입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체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 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잦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정보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코 업체와 교신을 시작할 때에는 체코 진출을 위한 가격 설정에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해야 한다. 첨부 파일을 보낼 때는 파일명 및 내용이 영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샘플 요청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체코업체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체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제품을 생소하게 여기기도 하며, 특히 운송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강점으로 앞세워 체코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체코 업체들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상태, 품질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저가의 소비재, 화장품의 경우 관행적으로 무료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며 샘플비용 및 운송비 역시 지불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3) EU 인증

비 EU 국가와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바이어들은 EU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CE와 CPNP 등 품목에 따른 적합한 EU 인증 보유는 체코 시장 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국내제품에 관심이 있어 논의하던 과정에 인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제 거래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들 특성에 따라 직접 인증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업이 인증을 자체적으로 취득해오는 것을 선호한다. EU 인증은 체코뿐만 아니라 모든 EU 국가 진출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이 어떠한 인증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사전에 파악 후 미팅에 임하는 것이 좋다.

4) 지속적, 적극적 사후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주 후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이 아닐 경우 메일에 대한 회신이 늦은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체코 역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므로 유선으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이메일 교신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다. 체코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해 올 경우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국내업체 측에서도 바로 교신에 응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경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 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상담 시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사의 제품정보를 제공해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응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쯤 답신을 하겠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산업재의 경우에는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 기업의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5) 거래조건 제시 시 유의사항

체코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성사 전 정확한 운송비 부담 주체 및 지불 항목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다. 해상 운송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나, 비 EU 국가와의 거래 경험이 전무하거나 운송 처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DDP(Door to Door)로 운송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국 측에서 전체 운송절차를 처리하고 운송비는 인보이스에 포함해 바이어측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므로 (특히 첫 거래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거래 체결에 도움이 된다.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은 경우,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 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로 상담 진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바,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체코 업체에 가능한 가격을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잘 맞지 않아 가급적이면 피하고, 품질과 A/S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산출한 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가의 대형 수입상을 통해 외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조건(한국 수출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개월의 인도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렵지만, 소량씩 적기(일주일 내)에 외상(60~90일)으로 공급해주는 인근 국가의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EU 국가 내에 법인을 운영하거나 적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이 있다.

6)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한국과 달리 체코에서는 아직 후불결제 시스템이 통용되고 있어 계약 체결 시 100% 선불 결제를 선호하는 국내기업과 지불 조건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고액 거래가 아닌 이상 비L/C 거래를 선호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수속이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 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관해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 서류 원본 없이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이메일 탈취 등을 통한 무역 사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체코를 경유한 입금 사기부터 교신 도중 국내기업 혹은 바이어를 대신하여 이메일을 대신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 사기가 진행되고 있어, 인보이스 상의 은행명, 은행주소, 수상한 이메일 등은 이중 확인을 하고, 물품 선적 또는 송금 이전에 유선 통화 등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처음 접촉은 언어 소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호 간의 오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 접촉 시 구두 영어(전화)보다는 e-메일을 이용해 교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e-메일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2) 이메일을 통한 소통 시 유의할 점

한국에서 오는 이메일이 스팸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메일 발송 후 2~3주 이내에 답신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코에서 보낸 메일도 한국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거래논의 시 KOTRA 프라하 무역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체코업체의 메일을 받은 경우, 완벽한 답신을 바로 할 수 없더라도 수신했음을 알리고 답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답신을 언제쯤 보내겠다고 알림으로써 상대방과 단절 없이 유연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유를 가지고 친절·솔직하고 약속은 꼭 지킬 것

현지 업체들과 연락 시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인내심 있고 친절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너무 빈번한 이메일과 전화연락은 체코 업체들이 대체로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체코는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거래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 국내기업과의 교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기업 측에서 주로 당황하는 부분이나 체코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교신을 중단하는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알려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상담회에 참여했던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담 이후 보내주기로 했던 자료(카탈로그, 가격정보, 비즈니스 모델 등)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상담 약속은 최소한 2주 전에 약속하고 확실한 통역으로 오해를 줄일 것

체코를 방문해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약속은 2~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며 7~8월, 12월~1월 초는 하계휴가 및 크리스마스 & 연초 휴가로 인해 1~2주가량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종종 일부 국내기업은 이메일이 아닌 1:1 미팅을 통해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 무작정 바이어와 미팅을 잡는 경우가 있으나 체코 바이어들은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 이러한 미팅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화상상담 스케줄과 달리 품목이 적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코로나19로 화상상담(비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화상상담 주선을 할 경우 약 1달 전에 서로에게 공지하여 스케줄을 잡는 것이 보통인데, 품목이 적합할 경우 바이어측에서 스케줄보다 빠르게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 상담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 1) Alza (Alza.cz)
 - 개요: 알자(Alza.cz)는 체코, 슬로바키아 및 중부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온라인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지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50여개를 두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lza는 1994년 Alzasoft라는 이름으로 Ale Zavoral이 창업하였다. 2020년 기준 매출규모는 약 1.76조 유로, 고용인원은 2,3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이 주요 품목이나 이외에도 장난감, 취미, 향수 등 뷰티용품, 시계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알자 프리미엄(Alza Premium)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배송, 회원 전용 특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전자제품 PB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데, 컴퓨터, PC 및 모바일 주변제품 등 자체 PB상품을 'Alza PC' 등 'Alza 00'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Alza는 신규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인 Alza Dropshipment를 런칭해 Zoot(패션), Alkohol.cz과 같은 대형 파트너를 참여시킴으로써 Alza에서 취급했던 패션, 주류 등의 품목을 보완해 해당 플랫폼에서 2020년 전년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에는 한 해 주문 건수가 1,800만 회에 달하고, 고객수가 520만을 상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2) Notino (Notino.cz)
 - 개요: 노티노(Notino)는 체코 등 24개국에서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체코 최대 뷰티 전문 상거래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쇼핑몰은 체코에만 있으며,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에서 7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Notino는 2004년에 설립되었다. 2020년 매출액은 563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202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737백만 유로를 기록하여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종업원 수는 약 1,7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뷰티 전문 쇼핑몰로, 1,150개의 브랜드 55,000여개의 뷰티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향수, 메이크업제품, 헤어, 스킨, 구강용품 등 뷰티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을 취급한다.
 - 특징: 많은 제품들에 가격과 관계없는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90일내 반품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인 서비스, 선물 포장 등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 3) Mall CZ (Mall.cz)
 - 개요: 몰 씨켓(Mall.cz)은 200만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체코에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다.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그룹인 MALL 그룹에 속해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all.cz은 2000년에 창업하였으며, 2020년에는 2억 7천 5백만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고용인원은 약 400명이다. (MALL 그룹 전체는 4,000명 이상)
 - 주요 판매 품목: 종합 쇼핑몰로서, 가전제품, 전자기기, 패션, 뷰티, 자동차용품, 아웃도어 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세탁기, 청소기 등 백색 가전이다.
 - 특징: Mall pay라는 독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는 결제가 간편하며, 체코 내에서 많은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배송이 빠른 편이다. Mall.cz 역시 Alza와 유사하게 Mall Partner Service를 통해 파트너사를 유치하여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
- 4) Rohlik (rohlik.cz)
 - 개요: 식품, 약품 및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체코 내에서 식료품 부문 온라인 쇼핑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Rohlik은 2014년 창업하였으며, 2020년 기준 3억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고용인원은 약 2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빵, 과일, 고기, 생선, 유제품, 음료 등 식료품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16,000개 품목이다.
 - 특징: Rohlik point 라는 비대면 배송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구매 60분 이내에 정해진 픽업 장소(택배 보관함과 유사)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매한 제품을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주변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2022년 현재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뮌헨,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루마니아,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5) CZC (CZC.cz)
 - 개요: Alza와 더불어 체코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이며, Mall.cz과 같이 2016년부터 MALL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CZC는 1999년에 창업하였고, 2020년 기준 약 1억 5천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고용인원은 약 2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65,000개 이상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랩톱, 휴대폰, PC 구성품 등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 특징: Alza와 유사한 회원제로 CZC.Klub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할인, 무료 배송, 포인트 제공 등 회원 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 전역에 지점과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주문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의 B사

B사는 2013년 4월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라하를 처음 방문, 총 6개사와 상담했다. B사는 본 사절단 참여를 통해 체코에 시장성이 있음을 감지했으며, 상담장에서 만났던 X사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2013년 11월 프라하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유니폼을 납품 시, 유니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B사는 샘플 제작 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원단 염색을 위한 염료를 장기간 수소문해 다시 도전하고, 첫 주문 시 바이어의 코멘트를 적극 수용해 2차 주문에는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B사는 X사로부터 17만 달러 규모의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첫 주문의 기쁨도 잠시, X사와 첫 거래 시 B사는 바이어와 네 번의 대면 접촉을 했음에도 첫 거래액 결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라하 무역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바이어를 접촉했다. 또한, B사의 8월 출장 당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어 미팅에 동석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무역관에서는 X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군복조달기업인 K사 또한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나누고, K사의 문의가 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B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체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공공조달 전문기업인 X사와 K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2) 한국의 A사

여드름 등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 2017년 KOTRA 신규수출 기업화 사업에 가입하였다. 1:1로 수출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체코 바이어와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을 방문했던 체코 바이어 C사는 미팅에서 A사의 아토피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체코로 돌아온 바이어는 샘플을 통해 아토피 등 민감성 피부에 효과가 있음을 현지 소비자 및 거래선을 통해 확인하였고 A사와의 거래를 희망하였으나 당시 내수기업이었던 A사는 유럽 화장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이어는 A사와의 거래 지원을 프라하 무역관에 요청하였고, 무역관은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유럽 인증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A사는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유럽 인증 취득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프라하 무역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A사와 C사에 제안하였고, 양사는 소비재 수출대전 사업에서 양측은 체코 및 6개국 독점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도 무역관은 체코 현지 동향, 가격 책정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였다. 특히 언어적 문제 등으로 바이어와의 교신이 어려웠던 A사는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바이어와 교신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약 1년간 CPNP 취득을 준비하였다.

A사 제품의 품질에 확신이 있었던 바이어는 A사의 인증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바이어 CPNP 취득을 위해 현지 라벨링 번역, 인증에 필요한 서류 조인 등 A사 유럽 진출을 측면 지원하였다. 2017년 미팅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CPNP 취득을 기다린 끝에 2019년 초 A사는 1차적으로 2개 제품에 대해 CPNP 취득을 완료할 수 있었다. CPNP 취득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어와 가격조율,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화장품 효능 등에 대한 자료 등 바이어가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교신을 위해 프라하 무역관과 수출전문위원은 1:1 밀착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수출기업이 전무한 국내기업은 인보이스 작성,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등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바이어와의 미팅에도 수출전문위원과 함께 미팅에 참여,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KOTRA의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20년 수출을 기록하였다.

3) 한국의 F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위한 인공호흡기 제조기업 F사 수출 성역 지원하여 성공하였다. 2020년 3월 체코정부에서 긴급하게 한국에 인공호흡기 관련 제품을 요청하였고, 국내 인공호흡기 제품 제조기업 F기업과 연결이 되어 납품을 진행하였다. 선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부품을 슬로바키아 벤더에게 공급받음으로써 진행할 수 있었고, 인공호흡기 10대를 수출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부조달 사례가 되었다. 이는 무역관이 중심이 되어 체코 보건부와 슬로바키아 벤더, 국내기업 사이 모든 교신을 핸들링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해결책 제안, 제품 선적까지 밀착 지원하여 성약 이룩한 것으로, 국내 업체의 신속한 대응과 무역관의 밀착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의 S사

철강 업체인 S사는 2020년 말 GP유럽 사업을 통해 KOTRA 프라하무역관을 만났다. S사는 프라하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하였고, 무역관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다. 이후 2021년 여름, 무역관이 주선한 성과결산 상담회를 통해 현지 대형 바이어에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우수한 제품 품질과 무역관에 대한 바이어의 신뢰를 바탕으로 샘플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S사의 품질과 꼼꼼함에 만족한 바이어는 샘플 수출을 시작으로 큰 규모의 오더를 발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S사는 2021년 체코 수출 약 410만불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수출 이력을 바탕으로 추가 바이어를 발굴하여, 2022년 올해에는 더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은 S사의 우수한 품질과 담당자의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지사화 사업을 통한 무역관의 꾸준한 바이어 관리와 제품 홍보를 통해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체류 허가 종류

단기 비자로는 쉥겐 비자(단기 취업 비자)가 있으며, 장기 비자 및 체류 허가는 거주 목적에 따라 유학, 취업(Employee Card, Blue Card 등), 사업, 투자, 가족결합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2012년 6월 1일부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도 가능해졌다.

2) 단기체류

단기체류는 90일 이하의 체류를 뜻하며, 한-체코 사증 면제 협정(양자협정)에 따라 단순방문(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의 경우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체코 내에서의 체류에 한해 양자 협정상 규정된 요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무비자 또는 유효 사증을 받아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체코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비자취득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장기체류 희망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는 것이 권장된다.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 체코는 2022년 4월 9일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코로나19에 위험도에 따른 위험국 구분도 폐지하고 입국 시 격리,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 여부 증빙 의무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체코를 관광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경우도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체코 정부는 코로나19관련 모든 방역조치를 2022년 5월 4일부로 모두 해제하여 현재 체코 내 마스크 착용의무도 없다.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라 한국 외교부도 2022년 5월 24일부로 체코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2년 6월,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돼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한국인이면 여행 및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체코에서 1년간 머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비자목적 변경)을 할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최대 300건의 비자만 발급된다.

○ 비자신청 요건

- 체코 내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 목적으로 하는 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체코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필요서류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사진 3매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
- 왕복 항공권/예약 확인서, 또는 귀국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출국 교통편 승차권 (영문 출국 항공권/예약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은행잔고 증명서 및 6개월간 거래명세서(1년 체류 시 약 600만 원, 체코어 번역 필요),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체코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 서약서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만 유로 이상)
- 체코 내 거주지 및 업무지 주소(신청서에 기입)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주한 체코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대리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대사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비자 취득 후 입국했을 때 3일 이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

4) 고용카드 (Employee Card)

고용카드는 EU외 국가의 시민에게 취업과 거주를 동시에 허가하는 장기 체류 허가로, 교육수준이나 자격조건에 크게 관계없이 발급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취업허가서이다. 고용카드는 고용계약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고용계약상 월임금이 체코 법정 최저임금 이상, 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카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다.

○ 발급 절차

- 고용카드가 발급 가능한 직장을 찾는다.

노동부의 Employee card가 발급 가능한 일자리 정보 사이트(<https://www.uradprace.cz/web/en/vacancies-search-1>)에서 일자를 검색할 수 있다.

- 각국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에서 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체코거주 시 체코 내무부에 신청 가능)

○ 고용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 고용카드 신청서 (<https://www.uradprace.cz/web/en/application-form>)

신청서에 반드시 취업예정인 일자리 등록 번호(노동부 Employee card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와 일자리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여권 (Employee card 기간 +90일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증명사진 2장
- 직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 증명 서류
- 체코 거주기간 동안 거주지 증명 서류
- 고용(근로) 계약서 (또는 지정된 기일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명시한 서류)
- 전문직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련 자격증
-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서 및 범죄기록증명서

비자 발급 허가 후 Employee Card 발급을 목적으로 한 단기 비자를 받게 되며 여권에 비자가 발행되기 전에 여행자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받은 단기 비자로 체코 입국 후 3일 내에 외국인 경찰서에서 거주지 등록이 필요하며, 내무부에서 본인 생체 인식 데이터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고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Employee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1만 유로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체코 입국 시 면세 범위는 430유로(육로 여행객 300유로)이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술 면세 범위

- 알코올 도수 22% 초과 - 1L 또는
- 알코올 도수 22% 이하 - 2L 또는
- 와인(Still Wine) - 4L 또는
- 맥주 - 16L

○ 담배 면세 범위

- 궤연(cigarette) - 200개비 또는
- 가는 엽궤연(cigarillo: 3g 이하) - 100개비 또는
- 엽궤연(cigar) - 50개비 또는
- 엽연(파이프용 담배) 250g

○ 외국환 신고

-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코로 입국 시)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420-234-090-411
주소	Slavickova 5, 160 00 Praha 6 - Bubeneč
홈페이지	http://cze.mofa.go.kr
비고	- 업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휴대전화): +420-725-352-420 / -이메일: czech@mofa.go.kr

○ 체코한인회

전화번호	+420-774-744-669
주소	Sokolska 1792/52, Nove Mesto, 120 00 Praha
홈페이지	https://www.czechkoreans.com
비고	이메일 : czechkoreans@gmail.com

○ 프라하 한글학교

전화번호	+420-777-797-630
주소	Santrochova 2, Praha 6, Zakladni skola Petrin Jih
홈페이지	http://www.prahaks.korean.net
비고	이메일: praha.k.school@gmail.com

○ 체코-코리아 협회

전화번호	+420-774-915-727
주소	Na Folimance 2155/15, 120 00 Praha 2
홈페이지	http://www.cks-korea.cz
비고	이메일: info@cks-korea.cz

<자료원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체코한인회, 프라하 한글학교, 체코-코리아 협회>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체코정부

전화번호	+420-224-002-111
주소	Nabrezi Edvarda Benese 4, 118 01 Praha 1
홈페이지	http://www.vlada.cz

○ 체코 산업통상부

전화번호	+420-224-851-111
주소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po.cz

○ 체코 외무부

전화번호	+420-224-181-111
주소	Loretanske namesti 5,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zv.cz

○ 체코 법무부

전화번호	+420-221-997-111
주소	Vysehradska 16, 128 10 Praha 2
홈페이지	http://www.justice.cz

○ 체코 노동복지부

전화번호	+420-221-921-111
주소	Na Poricnim pravu 1/376,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psv.cz

○ 체코 재무부

전화번호	+420-257-041-111
주소	Letenska 15, 118 1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fcr.cz

○ 체코 내무부

전화번호	+420-974-811-111
주소	Nad Stolou 3, 170 34 Praha 7
홈페이지	https://www.mvcr.cz

○ 체코 교육부

전화번호	+420-234-811-111
주소	Karmelitska 529/5, 118 12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smt.cz

○ 체코 국방부

전화번호	+420-973-201-111
주소	Tychonova 221/1, 160 00 Praha 6
홈페이지	http://www.army.cz

○ 체코 문화부

전화번호	+420-257-085-111
주소	Malezske namesti 1,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kcr.cz

○ 체코 환경부

전화번호	+420-267-121-111
주소	Vrsovicka 1442/65, 110 10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mzp.cz

○ 체코 지역개발부

전화번호	+420-224-861-111
주소	Staromestske namesti 6,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mr.cz

○ 체코 보건부

전화번호	+420-224-971-111
주소	Palackeho namesti 4,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zcr.cz

○ 체코 농림부

전화번호	+420-221-811-111
주소	Tesnov 65/17,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eagri.cz

○ 체코 교통부

전화번호	+420-225-131-111
주소	Nabrezi Ludvika Svobody 1222/1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dcr.cz

○ 체코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420-266-721-300
주소	Na Florenci 2116/15,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komora.cz

○ 체코 투자청

전화번호	+420-296-342-500
주소	Stepanska 15, 120 00 Praha 2
홈페이지	https://www.czechinvest.org

○ 체코 통계청

전화번호	+420-274-051-111
주소	Na padesatem 3268/81, 100 82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czso.cz

○ 체코 관세청

전화번호	+420-261-331-111
주소	Budejovicka 7, 140 00 Praha 4
홈페이지	https://www.celnisprava.cz

○ 체코 국세청

전화번호	+420-296-852-222
주소	Lazarska 15/7, 117 22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financnisprava.cz

○ 체코 의약관리청

전화번호	+420-272-185-111
주소	Srobarova 48, 100 41 Praha 10
홈페이지	http://www.sukl.cz/

○ 체코 관광청

전화번호	+420-221-580-111
주소	Stepanska 567/15, 120 00 Praha 2
홈페이지	https://www.czechtourism.cz/

○ 체코 중앙은행

전화번호	+420-224-411-111
주소	Na Prikope 864/28, 115 03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cnb.cz/

○ 체코 언론 사무소(CTK)

전화번호	+420-222-098-111
주소	Opletalova 5/7, Praha 1, 111 44
홈페이지	www.ctk.cz
비고	체코 언론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코 뉴스 사이트: https://www.ceskenoviny.cz/

<자료원 : 체코정부, 각 정부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5.534 CZK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메뉴)	1메뉴	6.200
2	식품	쌀(Round Grain)	1kg	3.000
3	식품	계란	10개(대)	1.900
4	식품	쇠고기 등심(Hovezi Svicova)	1kg	35.100
5	식품	돼지고기 커틀릿(Veprove Panenka)	1kg	11.300
6	음료	생수 (마트 구입 시)	1.5L	0.600
7	음료	병맥주(Pilsner Urquell)	500ml	1.100
8	의료	진통제 (Ibalgin 200mg)	24정	2.300
9	교통	대중교통 기본요금 (프라하 시내버스, 지하철, 트램 통합 티켓)	30분	1.200
10	교통	택시요금 (프라하 도심 기준, AAA택시)	1Km(기본요금 제외)	1.600
11	교통	도심 주차료 (프라하 기준, 가격대 3구역 기준)	1시간	1.600
12	서비스	헤어컷 (한인미용실, 여성 짧은 머리 기준)	1회	31.3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Gasoline)	1L	1.500
14	서비스	경유(Diesel)	1L	1.7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프라하 멀티플렉스, 2D 기준)	성인일반 1장	8.600
16	여가	담배 (말보로)	1갑	5.200
17	숙박	중급호텔(3성급, 싱글, Ibis Praha Old Town 기준)	평일 1박	84.200
18	임금	월최저임금 (2022년 기준)	법정최저	634.4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초등학교 1-5학년) 수업료	연간	19620.9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7.000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 노동부, 맥도날드, 테스코, drmax.cz 등 각 판매처 사이트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체코 코루나(Koruna)로 약칭은 "k" 또는 "CZK"이다. 체코 화폐는 지폐의 경우 100, 200, 500, 1,000, 2,000, 5,000체코 코루나(Korun)의 6종이 있으며, 동전의 경우 1, 2, 5, 10, 20, 50코루나의 6종이 있다.

체코는 EU가입국이나 아직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관광지에서는 유로화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이 은행고시 환율(또는 환전소 환율)보다는 불리한 환율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코루나로 거스름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럴 경우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환율을 잘 계산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체코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유로화를 체코 코루나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임의로 팁을 포함하거나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청해 금액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방법

주말이나 은행 개점시간 이외에는 호텔이나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되, 환전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를 둘러보고 환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유리하게 고시해 두고 대신 고율의 수수료(4~5%)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체코 코루나화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길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이 체코 화폐 모양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체코 화폐가 아닌 타 국가의 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내 환전소 이용 시 체코 화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환전소에서 환전 시 주의할 점으로는 큰돈(1,000유로 이상)을 환전할 시 ID카드 또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태환성: 통화 교환 권리가 보장되어 어떤 목적에서든지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성질.

신용카드 이용

예전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프라하를 포함한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 중심지 식당,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규모 식료품점(Mini Market), 길거리 가판점, 일부 식당, 선물가게 등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체코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Visa 및 Master 카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방식은 비접촉식(Contactless) 카드사용이 일반적이다. 비접촉식 카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주로 500코루나 이상)결제 시 PIN을 입력하는 방식(서명불요)이나, 한국 카드의 경우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PIN 넘버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서명 후 카드에 있는 서명과 대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뒷면에 미리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1) 교통상황

체코 도심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지하철(프라하만 존재)이 운행되며, 소도시 및 외곽지역의 경우 대부분 버스가 운행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시간표의 시간에 거의 맞춰 운행되고 정류장마다 운행시간표가 표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다. 프라하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해 편리하며,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프라하 도심의 경우 출근시간(오전 8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4~6시)에 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2) 대중교통

프라하를 포함한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으며, 외곽지나 소도시의 경우 버스가 운행되나 간격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더 활발한 편이다. 프라하의 경우 승차권은 지하철, 버스, 트램 등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을 한 번에 커버하기 때문에 경제 적이며 편리하다. 1회용 티켓의 경우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 시점을 기록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장소는 각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 센터 등이다.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돼 있다.

프라하의 경우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중교통 여정 검색 및 해당 구간의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프라하 트램 내 승차권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트램에서 바로 구매(비접촉식 결제카드로 가능, 구매 시점부터 효력발생)가 가능하며, 휴대폰 SMS으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성인)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 30분: 3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1)
- 90분: 4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42)
- 24시간: 12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120)
- 72시간: 33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30)

정기권의 경우 Litacka 카드를 사용하며, 일반(성인) 정기권 요금은 아래와 같다. 최근에는 정기권을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결제카드에 등록해 사용이 가능하다.

- 1개월: 550코루나
- 3개월: 1,480코루나
- 1년: 3,650코루나

대중교통 이용 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한 승차권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유효한 승차권이 없는 경우 최대 1,500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중점 단속 대상으로 반드시 표를 구입한 후 승차하고, 승차권을 구입했으나 개찰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무임승차로 간주하므로 항상 개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한다.

버스

프라하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지하철과 트램이 운행되어,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버스는 주로 트램이 운영되지 않는 외곽지역을 운행한다. 프라하 시내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돼 관광객이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버스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며, 버스 내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단,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시에는 메트로나 트램이 없기 때문에 도심이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100번, 119번, 191번)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프라하 중앙역과 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직행버스(AE 버스)는 20~30분 간격으로 운행(약 40분 소요)되며, 프라하 대중교통 승차권이 적용되지 않아 인포센터나 버스 기사에게 별도 요금(성인 일반 100코루나)을 지불해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대부분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시 호텔 프론트에서 일반 택시를 불러달라고 할 수 있다. 호텔 앞 대기 택시는 요금이 다소 비싼 편이다. 시내 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요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목적지를 기사에게 말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콜택시 업체로는 AAA(+420-222-333-222), City Taxi(+420-257-257-257), Modry Andel(+420-737-222-333), Halo Taxi(+420-241-114-111) 등이 있다. 해당 번호를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오며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하다.

프라하의 경우 우버, Bolt, Liftago 등 공유택시가 운영하고 있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유택시가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지하철, 트램

1) 지하철

지하철은 프라하에만 존재하며, 프라하 지하철노선은 A선(초록색), B선(노란색), C선(빨간색) 총 3개의 노선이 있다. 환승역으로는 Mstek, Muzeum, Florenc가 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피크시간에는 2~4분, 나머지 시간에는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승하차 시 출입문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지하철도 모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며, 지하철 승강장을 내려가기 전 에스컬레이터 앞의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 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2) 트램

프라하의 경우 트램이 잘 발달돼 지하철 역 사이와 주요 중심지를 트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트램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노선 트램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20분~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트램은 프라하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며, 트램탑승 후 승차권을 트램 내부에 있는 개찰기에 넣어 사용 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프라하 트램 내에 승차권 구매기가 설치돼 트램에서 바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찰이 필요 없이 구입 시점부터 사용시간이 적용된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의 경우 기존 스마트폰에서 유심칩만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며, 유심칩의 경우 공항이나 도심의 휴대폰 통신사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휴대폰 통신사로는 O2, T-Mobile, Vodafone이 있다. 또한, 충전식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고, 후불제인 경우 이동 통신사마다 약정 요금제 계약기간이 다르므로 통신사를 방문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https://www.o2.cz/osobni/en/mobile-tariffs>

- T-Mobile: www.t-mobile.cz/web/en

- Vodafone: <https://www.vodafone.cz/en/calling/tariffs/>

인터넷(와이파이)

체코 내 인터넷 사용은 일반화돼 있으며, 와이파이도 프라하의 경우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택에 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업체(O2 또는 Vodafone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내역 확인용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되며, 이후 인터넷 설치기사가 연락해 신청 주소지에 이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주며 설치를 도와준다(O2 기준). 인터넷 설치 후 문제 발생 시 각 회사의 상담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각 인터넷 회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www.o2.cz/osobni/en/adsl-vdsl-internet

- Vodafone: www.vodafone.cz/internet/

라. 관광명소

○ 프라하성(Prague Castle)

도시명	프라하
주소	119 08, Prague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시즌(4. 1.~10.31.)<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하성 전체: 6:00~22:00- 역사 건물: 9:00~17:00○ 겨울 시즌(11. 1.~3. 31.)<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하 성 전체: 6:00~22:00- 역사 건물: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9세기 후반 현재의 프라하성 자리에 작은 성들이 건축됐으며, 1303년 화재로 작은 성들이 소실됐으나 1333년 카렐 4세(즉위 전)의 지시로 프라하 성이 축성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체코 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통령실이 프라하 성에 들어가게 됐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224-372-423○ 홈페이지: https://www.hrad.cz/en/prague-castle-for-visitors

○ 성비투스 대성당(St. Vitus Cathedr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III. nadvori 48/2, 119 01 Praha 1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시즌(4. 1.~10.31.) : 9:00~17:00○ 겨울 시즌(11. 1.~ 3. 1.) :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10세기경부터 원형 건물이 있었으나, 1344년 카렐 4세 때 성당 건설이 시작됐다. 1873~1929년간 건설된 성당 서쪽 부분(신 고딕 양식)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길이 124M, 최대폭 60M, 최고 높이 100M 정도 규모)으로 완공됐다. 성당 지하에는 카렐 4세를 비롯한 수 명의 체코 왕 무덤이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224-372-423 홈페이지: https://www.hrad.cz/en/prague-castle-for-visitors

○ 카렐교(Charles brid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Karluv most, 110 00 Praha 1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342년의 대홍수로 현재의 다리 자리에 있던 목조 다리(935년 건설) 및 석조 다리(JUDITH 다리, 1170년 건설)가 모두 유실된 이후 1357년 카렐 4세의 명령에 의해 당시 27세인 독일 궁정건축가인 피터팔러(프라하성과 비투스 성당도 건축)에 의해 착공돼 1402년에 완성됐으며, 체코에서 피섹의 돌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이다. 피터 팔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 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적 역할 수행도 고려해 다리를 건설했다. 이곳은 30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이다. 이 다리는 체코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까렐4세의 이름을 따라, 1870년 까렐교로 명명됐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리됐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object/places/93/charles-bridge-karluv-most

○ 천문시계(Astronomical Clock)

도시명	프라하
주소	Staromestske nam. 1, 110 00 Stare Mesto
운영시간	천문시계 인형 퍼포먼스 운영 시간: 9: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천문 시계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낮과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천문 시계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한다. 천문 시계 밑의 원형은 12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매시 정각 시계 옆 해골 인형이 움직이면서 종을 치면, 동시에 그 위 두 개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 반신 목각인형이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236-002-629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object/places/3129/astronomical-clock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도시명	프라하
주소	vaclavske namesti, 110 00 Prague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광장(廣場)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서 출발해 나 프리코페거리(서울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까지의 길이 750m, 폭 60m로 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대로에 가깝다. 이 광장은 20세기 초까지 마시장으로 사용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가마상 밑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됐고, 1948년에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됐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했으며, 1989년 민주화 혁명(벨벳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object/places/182/wenceslas-square-vaclavske-namesti

<자료원 : 프라하성 및 프라하시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 스타라 쿠젤나(Stara Kuzelna)

도시명	오스트라바
전화번호	+420-733-390-701
주소	Na Baranovci 347, 710 00, Ostrava-Slezska Ostrava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13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 일 12:00~20: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비고	홈페이지: https://stara-kuzelna.cz/cz/home

○ 우 프리 루지(Pivovar U Třetího břevna)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601-588-281
주소	Husova 10, 110 00 Praha 1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13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11: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전통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를 판매한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u3r.cz/en/
----	---

○ 콜코브나 첼니체(Kolkovna Celnice)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212-240
주소	V Celnici 1031/4, 110 00 Praha 1
가격	가장 유명한 Kolkovna 텡메뉴 기준 10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00~24: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텡과 고크셀 맥주의 조합이 유명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kolkovna.cz/en/kolkovna-celnice-13

○ 부드바르카 데이비체(Original pivnice Budvarka Dejvice)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960-820
주소	Wuchterlova 336/22, Praha 6
가격	체코 메뉴 기준 8~10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유명 맥주인 부드바르 맥주 전문점으로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dejvice.pivnice-budvarka.cz/

○ 우 플레꾸(U Fleku)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934-019
주소	Kremencova 165/11, 110 00 Praha 1
가격	체코 메뉴 기준 10~14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00~22: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500년 된 체코 전통식당으로 흑맥주가 유명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s://en.ufleku.cz/

- 한국식당

○ 한일관(Hanil)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715-867
주소	Slavikova 1581/24, Praha 3-Zizkov
가격	초밥세트 19~76달러, 롤 18~19달러, 한식 메뉴 13~17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토: 11:00~23:00 (브레이크 타임 14:30~17:3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라하에서 운영한 지 오래된 고급 한식/일식 식당으로 다양한 초밥 메뉴 및 한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hanil.cz/en/

○ 비빔밥 코리아(Bibimbap Korea)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37-917-956
주소	Chlumova 612/1, Praha 3
가격	한식 메뉴 8~13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 일: 12:00~21: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비빔밥, 김밥, 닭볶음탕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ibimbap.cz/korean

○ 마미(Mamy Korean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815-009
주소	Benediktska 1060/3, Praha 1
가격	한식 메뉴 8~13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1:3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메뉴가 다양하며 구시가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rahamamy

○ 토모(Tomo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233-695
주소	Manesova 35, 120 00 Praha 2
가격	초밥 17~18달러, 회 및 초밥 세트 19~61달러, 한식 메뉴 10~11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토 : 11: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와 스시 위주의 일식 메뉴가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restauracetomo.com/

○ 유니쿠(Yuniku korean Charcoal BBQ & Sushi)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77-667-083
주소	Slezska 1297, Praha 2
가격	구이 메뉴 9~21달러, 롤 메뉴 13~17달러, 한식 메뉴 12~17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소고기, 돼지고기 등 구이 위주의 메뉴, 초밥, 한식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yunikubbq.cz/en/

○ 프라하 포차(POCHA Original Korean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27-908-107
주소	Oldrichova 506, 128 00 Praha 2-Nusle
가격	한식 및 안주 메뉴 9~25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금: 11:30~23: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토: 12:00~23:00 ○일: 12:00~22:00
휴무일	휴무일 별도 공지

소개	한식 및 안주 위주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koreanpocha.cz/en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디플로맷 호텔(Vienna House Diplomat Prau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Evropska 370/15, 160 41 Praha 6
전화번호	+420-296-559-111
홈페이지	https://www.viennahouse.com/index.php?id=950&L=0
숙박료	○ 약 126~130달러 정도(수페리어 룸, 2022년 5월 평일 1박 기준) 숙박료는 시즌 및 예약시기, 예약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개	4성급 호텔로 대사관이 모여 있는 프라하 6지구의 데이비츠키카(Dejvicka)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시내 및 공항 연결이 용이하다.

○ 코린시아 호텔(Corinthia Hote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Kongresova 1655/1, 140 69 Praha 4-Nusle
전화번호	+420-261-191-211
홈페이지	https://www.corinthia.com/prague/
숙박료	○ 약 167~177달러 정도(디럭스 퀸룸, 2022년 5월 평일 1박 기준) 숙박료는 시즌 및 예약시기, 예약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개	5성급 호텔로 프라하 전경을 볼 수 있는 비셰흐라드 근방의 언덕에 위치해 도시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지하철 비셰흐라드 역 바로 옆에 위치해 시내 연결도 용이하다.

○ 호텔 마제스틱 플라자(Majestic Plaza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Stepanska 645/33, 110 00 Nove Mesto
전화번호	+420-221-486-100
홈페이지	https://www.hotel-majestic.cz/en/

숙박료	○ 약 105~126달러 (수페리어 더블룸, 2022년 5월 평일 1박) 숙박료는 시즌 및 예약시기, 예약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개	4성급 호텔로 프라하 중심지(바츨라프 광장) 근교에 위치해 시내 연결이 용이하다.

<자료원 : 호텔 웹사이트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게스트하우스

○ 프라하 우리집(Prague Woorijib)

도시명	프라하
주소	Hastalska 760/27, Praha 1
전화번호	+420-777-882-391
홈페이지	http://www.prahawoorijib.com/
숙박료	○ 도미토리 기준 성수기 35유로, 평수기 30유로 숙박료는 시즌 및 예약시기, 예약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개	도미토리, 2인~4인실, 가족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식 조식을 제공한다.

○ 엄지민박(Umji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Londynska 424/77, Praha 2
전화번호	+420-773-205-252
홈페이지	http://umjipraha.com/
숙박료	○ 도미토리 기준 성수기 30유로, 비수기 25유로 숙박료는 시즌 및 예약시기, 예약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개	바츨라프 광장 및 중앙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며, 한식 조식을 제공한다.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체코는 타 유럽에 비해 비교적 난민 유입이 많지 않고 서유럽 대비 테러 위협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치안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프라하를 포함한 관광도시에서는 소매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까를교, 구시가지 광장 등 주요 관광지외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기차, 정류장 및 역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올려두는 가방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의자 위나 아래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에도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외

곽지역 외에도 프라하 중앙역 주변 공원에는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접근할 경우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전화번호 158)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차량 운전 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와 같은 대도시 시내에는 트램이 운행되고 트램길과 혼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전 시 신분증, 유효한 면허증,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양 당사자 간 물질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후 가급적 사고차량 이동 없이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나, 고속도로나 혼잡한 도로의 경우 안전 삼각대를 후방에 두고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다. 양 당사자 간 물질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하인 경우는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를 마련해 보험사에 신고 가능하다. 단, 사고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영사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체코대사관(근무시간 중 +420-234-090-411, 근무시간 외 +420-725-352-420)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연락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 재외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한국 귀국 시 효력이 상실되는 임시여권)을 발급받는다. 여권발급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분실신고서, 여권 사진 2매, 한국행 e-ticket, 수수료 53달러 또는 이에 상당한 체코화가 필요하다. 주체코대사관 연락처 및 주체코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 경찰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번호: +420-234-090-411 /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420-725-352-420
- 주소: slavickova 5, Praha 6
- 이메일: czech@mofa.go.kr

○ 분실신고 경찰서

- 전화번호: +420-974-851-750
- 주소: Jungmannovo namesti 771/9, Praha 1
- 이메일: p1mopmus@mvcz.cz
- 찾아가는 길: 지하철 A선 Mustek역 하차 후 쇼핑센터 NEWYORKER를 찾음. NEWYORKER를 등지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골목길에 외국인경찰서 위치
- 참고사항: 신분증(여권 등)의 경우 분실 및 도난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타 소지품(핸드폰, 카메라 등)의 경우 분실이 아닌 도난신고만 가능함.

○ 여권 사진 촬영장소

- 경찰서 인근 Mustek 지하철 역내 즉석 사진기 이용
- 대사관 인근 Hradcanska 역 근처 사진스튜디오 이용, 소요시간 20분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화재신고: 150
- 범죄신고: 경찰 158, 시 경찰: 156
- 응급환자: 155
- EU 응급 전화번호: 112 (EU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 응급번호, 응급상황 시 경찰, 소방서 등 연결, 영어 가능)

4) 체코 코로나19 센터

- o COVID-19 핫라인: 1221
 - 영어 가능
 - 운영시간: 월-금 오전 8:00~19:00, 토·일 9:00~16:30

자료원: 주 체코대사관, 체코 보건부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 비자 취득, 외국인 거주 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 장치는 대부분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돼 있다. 가구를 포함한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전자제품 구비 여부는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 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연간 단위로 재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www.sreality.cz, www.expats.cz/praguerealestate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물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보증금으로 보통 월 임대료의 1~2개월치를 예치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 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니 1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 지불 시 계약 파기 규정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하고, 보증금을 주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만으로 시 집을 비워주기 전에 집주인은 파손 또는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파손으로 인한 금액을 감한 다음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해외로 돌아가는 경우) 종종 이를 악용해 집주인이 파손에 대해 과대하게 수리비용을 측정하거나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집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거주 중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수리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는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문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는 체코어와 영어로 각각 준비한 후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체코의 집주인들은 외국인들이 현지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현지 법률인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을 함께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주택 가격 현황

체코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매매와 임대 가격은 도시, 지역, 크기, 상태에 따라 격차가 크다. 프라하의 경우 복잡한 신축 아파트 허가절차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최근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관심이 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부동산 업체 Reality Mix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60㎡ 아파트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프라하는 약 751만 코루나(약 4억 580만 원)로 전년 동기대비 11.2% 상승했다. 동일 기준 브르노는 약 679만 코루나(약 3억 6,600만 원), 오스트라바는 약 294만 코루나(약 1억 5,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감소로 하락했던 임대료는 코로나 안정세 추세,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60㎡ 기준 아파트 월평균 임대가격은 프라하가 1만 9,093코루나(약 103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상승했다. 프라하의 10구역 중 가장 중심지인 프라하 1지구와 프라하 2지구의 60㎡ 기준 월평균 임대가격이 각각 2만 4,629코루나(약 133만 원), 2만 4,227코루나(약 131만 원)로 가장 높고 프라하 4, 9, 10지구가 약 1만 6,000~1만 7,000코루나(약 86만~91만 원) 정도로 프라하에서는 낮은 편이다. 동일 기준 월임대료의 경우 브르노는 1만 4,854코루나(약 80만 원), 오스트라바는 1만 2,733코루나(약 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최근에는 체코에도 휴대폰 보급의 일반화로 가정에서 일반전화 사용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미 전화가 설치된 경우 명의 변경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유선전화 신청 시에는 유선전화 공급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연락 후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진행이 완료되면(서명 후) 공급회사에서 설치하는 직원에 방문해 설치를 진행한다. 계약에서 설치까지 공급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서비스 취소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소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유선전화 신청은 UPC(Vodafone)와 O2를 통해 가능하며 O2의 경우, 체코 국내 무제한 유선 전화요금은 월 349코루나로 요금 상세내용은 O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rodej-o2.cz/o2-tarify-pevna>)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주파수의 경우 한국은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나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식수

체코에서 수도물은 위생적으로 식수로 마셔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체코 사람들이 수도물을 바로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나, 석회로 인해 경수 필터가 있는 소형 정수기(브리타 정수기 등)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체코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형 정수기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탄산수도 많이 마시는 편이며, 탄산수(Perliwa voda)와 탄산이 없는 생수(Neperliwa voda) 모두 마트 및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체코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딜러를 통해 시판되고 있으며, 다른 외제차도 각 대리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한국과 달리 수동기어 자동차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기어 자동차의 경우 수동기어보다 고가이며, 주문 후 자동차를 전달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구입 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판매자 이름이 등록 서류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하거나 판매자가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이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계약 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판매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등록 증명서(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svedceni o registraci vozidla (Technicky prukaz))

체코 내 중고차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고차 딜러샵은 AutoJarov, AAA Auto 등이 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구입에 비해 기술점검증명서(녹색 원본, Technical Certifica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시차(Demo Car)의 경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요 자동차 보험회사는 UNIQA (www.uniqa.cz) 또는 Allianz (www.allianz.cz)가 있으며,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보험 서류를 지참해야 자동차 인수가 가능하다.

차량가격

체코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세단보다는 중소형 해치백 모델이 대중적이며, 스코다,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의 중형 차량이 대중적으로 체코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체코에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최소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판매처별, 옵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스코다 Octavia G-TEC : 57만 9,900코루나(약 3,070만 원)부터
- 스코다 Fabia Monte Carlo: 44만 4,900코루나(약 2,350만 원)부터
- 현대 New i30 hatchback N Line: 48만 4,990코루나(약 2,560만 원)부터
- 폭스바겐 Golf Life: 60만 2,900코루나(약 3,170만 원)부터

운전면허 취득

체코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 면허증을 체코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체코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며, 단기간에 교환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700코루나)를 내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체코 내 206여개의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 발급 시 유효한 신분증(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 서류(국제운전면허증 보유시 공증 서류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사진은 교환처에서 직접 찍고 등록)

-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 (한국) 1종 대형 : (체코) B,C,D
 - (한국) 1종 보통 : (체코) B, C1, D1
 - (한국) 1종 기타 : (체코) B, B+E, C, C+E
 - (한국) 2종 : B
-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설명
 - AM: 50ccm까지의 오토바이, 15세 이상
 - A1: 125ccm까지의 오토바이, 16세 이상
 - A2: 25kW ~ 35KW까지의 오토바이, 18세 이상
 - A: 35kW 이상의 오토바이, 24세 이상
 - B: 3~3.5톤 승용차(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3.5톤 이상 로리(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8석 이상의 버스
 - C1: 3.5~7.5톤의 로리
 - D1: 8~16석의 소형버스
 - B+E: 3~3.5톤 승용차(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3.5톤 이상 로리(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상업은행(Komerční banka): 소매, 기업 및 투자 등 보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 체코 내에 399개의 지점과 160만 이상의 고객 보유
- 체코저축은행(Ceska sporitelna): 오스트리아 Erste 그룹의 일부로, 최다 고객(4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은행
- 체코슬로바키아 상업은행(CSOB): Komerční Banka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 가장 큰 상업 은행 중 하나. 280개의 은행 지점과

3,300개의 Postovni sporitelna 라는 우체국 저축은행을 운영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 계좌와 체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 거래가 자유로워 외화 표시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하며, 송금 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단, 은행거래 유지 및 해외 송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은행마다 차이가 크므로, 꼼꼼히 알아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은 필수다. 체코는 은행계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주지 않으며, 한국식 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 2주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 계좌개설 구비서류(상업은행 기준)
 - 신분증(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개인계좌의 경우 체코 KB(Komerčni Banka) 은행 내 코리안데스크가 있어 영어가 어렵거나, 한국어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은 분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인계좌의 경우 KB뿐만 아니라 Citi Bank 역시 코리안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유일 미국 국제학교로 외국인에게 선호도 높음 ○ 1948년 설립되어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과 the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회원으로 등록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학년별로 상이, 학교 홈페이지 참고: https://www.isp.cz/school-fees/
홈페이지	https://www.isp.cz/
비고	미국계 학교

○ The Pragu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PBS)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ECIS) 및 the Council of British Independent Schools in the European Communities (COBISEC)의 회원으로 등록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학년별로 상이, 학교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en/schools/prague/british-international/admissions/school-fees
홈페이지	http://www.pb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 Riverside Schoo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식 미션 스쿨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학년별로 상이, 학교 홈페이지 참고: https://www.riversideschool.cz/enrolment-information/school-fees/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 Lodynska Zakladni Skol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초등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진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말하며 고학년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의미한다. 저학년 때는 체코어, 자연, 산수,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이 주 과목이다. 고학년의 주 과목들은 체코어와 문학, 역사, 사회, 도덕, 지리, 산수, 자연, 물리, 화학,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몇몇 선택과목이 있다. (예: 학교 합창단, 컴퓨터 등등) 체코 초등학교에는 고학년부터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있다.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lodynska.cz/

◦ Gymnazium Duhovk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체코의 졸업 시험 Maturita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체결한 8개 국어 8개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비	학교에 문의 가능
홈페이지	https://www.duhovkagymnazium.cz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 University hospital Brno

도시명	브르노
주소	Jihlavská 20, Brno
전화번호	+420-532-23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University hospital Ostrava

도시명	오스트라바
주소	17. listopadu 1790, Ostrava-Poruba
전화번호	+420-597-3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Na Homolce Hospit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entgenova 2, Praha 5
전화번호	+420-257-2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Motol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V Úvalu 84, 150 06 Praha 5
전화번호	+420-224-431-111
진료과목	대학병원
비고	유선 연락시 영어 소통 가능한 사람과의 직접적 연결이 어려우나, 직접 방문시 0층 Reception에 영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있다. Reception의 안내에 따라 1층에 Foreign Department로 가서 보험, 진료과목 등을 안내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실도 이용 가능하다.

○ Military University Hospita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U Vojenské nemocnice 1200, 169 02 Praha 6
전화번호	+420-973-208-333
진료과목	국군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하며, 응급실도 이용 가능하다. Motol 병원과 함께 프라하 내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이다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메트로폴 즐리친(Metropole Zlicin)

도시명	프라하
주소	Revnicka 1, 155 21 Praha-Zlicin
홈페이지	http://www.metropole.cz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종합 쇼핑몰

○ 웨스트필드 호도브 (Westfield Chodov)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ztylska 2321/19, 148 00 Praha 11
홈페이지	https://cz.westfield.com/chodov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대규모의 종합 쇼핑몰

○ 팔라디움 (Palladium)

도시명	프라하
주소	nam. Republiky 1078/1, 110 00 Nove Mesto
홈페이지	http://www.palladiumpraha.cz
비고	프라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로 편리한 교통과 위치로 항상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자료원 : 각 쇼핑센터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테스코 에덴 (Tesco Extra Eden)

도시명	프라하
주소	U Slavie 1527/3, 100 00 Praha 10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에덴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 테스코 매장

○ 알버트 안델 (Albert Zlaty Ane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lzenska 344/1, 150 00 Praha 5-Andel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지하철 B선 안델(Andel)역 근방의 대형 알버트 매장

○ 사파 (Safa)

도시명	프라하
주소	Vysehradska 1349/2
취급 식료품	아시아 푸드 및 각종 식료품
비고	체코의 베트남 타운으로 주로 베트남 식품을 판매한다. 한국 식료품도 구매할 수 있다.

○ 마크로(Makro)

도시명	프라하
주소	Jeremiášova 1249/7, 150 00 Praha 5
취급 식료품	식료품 및 와인 등 전 품목
비고	회원제 창고형 매장으로 기업회원으로 가입시 이용가능하며, 고기 종류가 다양하며 대량 구매 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Albatross Golf Resort

도시명	비소키 우에즈드(Vysoky Ujezd)
주소	Sokolska 162, 267 16, Vysoky Ujezd
홈페이지	https://albatross.cz/en/

소개	국제 공항 부근 프라하 외곽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로 18홀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다.
----	---

○ 폼 팩토리(Form Factory)

도시명	프라하
주소	OC PALLADIUM Namesti Republiky 1079/1a 110 00 Praha 1 (nakupni centrum Palladium - 2, patro)
홈페이지	https://www.formfactory.cz/
소개	체코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

○ 뱌돌리 수영장(Podoli Swimming Poo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odolska 74, Praha 4
홈페이지	https://pspodoli.cz/
소개	비세흐라드 부근 블타바 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 및 레저 센터이다.

<자료원 : 각 편의시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3-01-01	2023-01-01
부활절	2023-04-07	2023-04-07
부활절	2023-04-10	2023-04-10
노동절	2023-05-01	2023-05-01
크리스마스 연휴	2023-12-26	2023-12-24
성 키릴과 성 메토디우스의 날	2023-07-06	2023-07-05
건국기념일	2023-09-28	2023-09-28
독립기념일	2023-10-28	2023-10-28
자유와 민주주의의 날	2023-11-17	2023-11-17
유럽승리의 날	2023-05-08	2023-05-08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체 조사>

10. KOTRA 무역관 안내

○ 프라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kretova 12,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420-245-005-650
- 이메일: judge0047@kotra.or.kr
- 참고사항: 무역관에 카탈로그 송부 시 체코 통관절차에 유의하여 송부 필요

공항-무역관 이동

1) 프라하(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

택시 승강장에 주차된 택시를 타게 될 경우 약 600코루나(약 24유로) 정도 발생한다.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체코 코루나 또는 유로를 준비해야 한다. 프라하는 우버, Bolt 등 공유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버를 이용할 경우 약 300~400코루나 정도 소요된다. 이동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다.

2) 프라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트램) 이용 시

프라하 공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지하철역 Nadrazi Veleslavin(A선)에서 하차 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Muzeum(A선)역에서 하차한다. 무역관은 A선(초록색)과 C선(빨간색)의 환승역인 Museum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Panorama Business Center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다. 프라하 시내에서 트램을 이용해 무역관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트램 11번 또는 13번을 타고 Muzeum 트램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Panorama business Center 건물에 위치해 있다. (보험사 VZP 옆 입구)

3)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 구매 방법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으로 버스/트램/메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티켓 종류는 30분, 90분, 24시간, 72시간 총 4가지이다. 프라하공항 내 티켓판매 기계는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며 현금은 체코 코루나만 가능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0분 티켓(40 코루나) 을 구매해야 한다. 버스 탑승 시 구매한 티켓을 버스 내 노란색 펀칭기에 펀칭해야 하며, 펀칭시간 기준으로 티켓 종류에 따라 탑승 시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90분 티켓의 경우 펀칭 시간부터 90분간 유효하며 버스, 트램, 메트로를 90분 내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하다. 다만 펀칭은 첫 대중교통 탑승 시에만 해야하며, 검표원이 불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펀칭된 대중교통 티켓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펀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번 되어 있을 경우 검표원 검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프라하 대중교통 연결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선택된 여정의 티켓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